

세법연구 20-01

개인기부 관련 과세제도 연구

2020. 10

연구진

연구책임자

권성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은주 책임연구원

김효림 연구원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기부금 현황 및 관련 제도	12
1. 개인기부금 규모	12
2.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17
가. 기부금의 정의 및 종류	17
나.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	18
다. 출연재산에 대한 조세지원	24
3. 기부금 투명성 관리제도	27
가. 기부금단체의 범위	27
나. 공익목적사용 의무	29
다. 회계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	32
III. 주요국의 기부금 현황 및 관련 제도	37
1. 미국	37
가. 개인기부금 규모	37
나.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38
다. 기부금 투명성 관리제도	44
2. 일본	53
가. 개인기부금 규모	53

나.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54
다. 기부금 투명성 관리제도	59
3. 영국	63
가. 개인기부금 규모	63
나.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65
다. 기부금 투명성 관리제도	74
4. 호주	82
가. 개인기부금 규모	82
나.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83
다. 기부금 투명성 관리제도	98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06
1. 국제비교	106
가.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106
나. 출연재산에 대한 조세지원 및 주식 보유 제한	111
다.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 의무	113
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무규정	116
2. 시사점	119
가. 납세자 간 과세형평성 제고	119
나. 기부금단체의 정비 및 조세지원 확대	121
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 완화 검토	122
라.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 의무 규정 효율적 정비	126
마. 투명성 관리 담당 기관의 일원화 및 국민 참여 제고	128
 참고문헌	 130

표 목차

〈표 II-1〉 개인기부금 규모(2012~2018년)	13
〈표 II-2〉 소득금액 대비 개인기부금(2012~2018년)	14
〈표 II-3〉 개인기부금 신고인원 및 1인당 기부금(2012~2018년)	15
〈표 II-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20
〈표 II-5〉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한도 및 공제율	22
〈표 III-1〉 미국의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40
〈표 III-2〉 일본의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56
〈표 III-3〉 영국의 개인기부금 규모	64
〈표 III-4〉 영국의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66
〈표 III-5〉 영국 Gift Aid 기부 시 대가의 한도	69
〈표 III-6〉 호주의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84
〈표 IV-1〉 기부금 조세지원 방식	107
〈표 IV-2〉 기부금 유형별 공제한도	108
〈표 IV-3〉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110
〈표 IV-4〉 현물기부 관련 제도	111
〈표 IV-5〉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112
〈표 IV-6〉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제한	113
〈표 IV-7〉 기부금 공익목적사용 의무 규정	115

〈표 IV-8〉 회계 투명성을 위한 공시의무 및 감사의무	118
〈표 IV-9〉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제한 규정 연혁	124

그림 목차

[그림 II-1] GDP 대비 개인기부금 비중	16
---------------------------------	----

I. 서론

- 우리나라는 노령화 및 양극화 문제의 심화로 복지 분야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임
 - 보건복지 예산은 2017년 32.1조원에서 2018년 37.2조원, 2019년 44.8조원으로 증가하였음¹⁾
 - 개인의 자발적 기부활동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의 개인기부는 경제규모가 유사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총소득 대비 개인기부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영국의 자선지원재단(CAF)이 최근 발표한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10년간 합산한 한국의 기부지수 종합순위는 57위로, GDP 규모가 유사한 수준인 호주(4위), 캐나다(6위), 이탈리아(54위)의 기부지수 종합순위보다 낮음²⁾
 - 금전기부 순위 역시 우리나라가 38위로, 호주(8위), 캐나다(10위), 이탈리아(33

1) <보건복지 예산>

(단위: 조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건복지 예산	25.5	29.6	33.1	33.4	34.1	37.2	44.8
증가율	14.6	16.0	11.8	1.1	3.2	11.1	20.2

자료: e-나라지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4, 검색일자: 2020. 8. 20.

2) CAF, *CAF World Giving Index-Ten Years of Giving Trends*, 2019, https://www.cafonline.org/docs/default-source/about-us-puplications/caf_wgi_10th_edition_report_2712a_web_101019.pdf, 검색일자: 2020. 8. 3. CAF(Charities Aid Foundation)의 세계기부지수(WGI)는 금전기부, 낯선 이 돕기, 자원봉사 세 가지 행동 각각의 점수로 순위를 정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산정함

위)보다 낮은 수준임

-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총소득 대비 기부금액은 2013~ 2018년 기간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총소득 100만원당 기부금액이 2012년에는 1만 7,336원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1만 2,197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각 국가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정부의 재정 수요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금 지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조세 지원정책은 개인의 기부를 유인하는 역할을 함
 -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조세지원방식을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함에 따라 고소득층의 기부혜택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기부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 세액공제 적용 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한계세율이 15% 이하인 납세자는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에서 감면세액이 동일하거나 증가하지만, 한계세율이 15%보다 높은 납세자는 세금 감면액이 감소하기 때문임
 - 국세청에 신고된 기부금의 규모를 보더라도,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규모는 2014년도에 전년 대비 7.83%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³⁾

- 조세지원제도 외에 개인의 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부받은 재산의 투명한 운영을 들 수 있음
 - 『나눔실태 2018』에 의하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기부 단체 및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7.8%(기부경험이 있는 응답자)로 높게 나타났고,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29%

3) 송헌재·고선·김지영,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개인기부 규모 추정」, 『유라시아연구』, 제 16권 제3호, 2019에 따르면, 세액공제가 처음 적용되었던 2014년의 기부금 절대치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4) 기부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비율은 96.6%임. 고경환·장영식·이연희·한솔희·진재현, 『나눔실태 2018』,

가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기관·단체를 믿을 수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음

- 따라서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단체가 기부금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신뢰가 필요함⁵⁾

-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인기부에 관한 조세지원제도와 기부받은 재산 및 운용소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함
 - 조사대상 국가는 상대적으로 개인기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및 우리나라와 조세제도가 유사한 일본임
 - 기부자 측면에서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기부받은 단체 측면에서 출연재산 및 운영소득의 고유목적 사용의무 및 공시제도를 살펴봄

-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부금 현황 및 관련 제도를 정리함
 - 제III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의 기부금 현황 및 관련 제도를 소개함
 -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및 기부금 투명성 관리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p. 100.

5) 고경환 외, 2019, p. 179.

Ⅱ. 우리나라의 기부금 현황 및 관련 제도

1. 개인기부금 규모

- 국세청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부금 규모는 2013년 7조 8,313억원에서 2014년 7조 7,178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014년 종합소득자는 14.4%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자는 7.83% 감소한 결과, 개인기부 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은 개인기부금의 조세지원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시점임
 - 세액공제 방식에서의 전환은 고소득자의 조세지원 규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고소득자의 기부금 감소를 예상하는 연구가 있었음⁶⁾
 - 기부금 규모는 조세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세정책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6)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제6권 제4호, 2013, p. 151.

송은주,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4호, 2015, p. 195.

〈표 II-1〉 개인기부금 규모(2012~2018년)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인 기부금	신고인원	5,595,960	5,803,070	5,308,252	5,298,631	5,350,152	5,607,321	5,874,463
	기부금	7,727,223	7,831,361	7,717,847	7,932,828	8,221,315	8,321,393	8,789,816
	기부금증가율		1.35	-1.45	2.79	3.64	1.22	5.63
종합 소득자	신고인원	886,617	879,216	821,210	783,982	715,260	788,527	856,865
	기부금	2,186,211	2,247,192	2,570,758	2,524,481	2,587,321	2,539,862	2,782,955
	기부금증가율		2.79	14.40	-1.80	2.49	-1.83	9.57
근로 소득자	신고인원	4,709,343	4,923,854	4,487,042	4,514,649	4,634,892	4,818,794	5,017,598
	기부금	5,541,012	5,584,169	5,147,089	5,408,347	5,633,994	5,781,531	6,006,861
	기부금증가율		0.78	-7.83	5.08	4.17	2.62	3.9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3-2-7〉 기부금 신고현황; 〈표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서 발췌하여 저자 정리

-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을 합한 총 소득금액 대비 개인기부금 총액의 비중은 2014년에 2013년 대비 11.26% 감소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2014년 종합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100만원당 기부금액은 1만 7,756원으로 전년도의 1만 6,724원 대비 6.17% 증가했지만,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고 2018년에 2.59% 상승함
-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 100만원당 기부금액은 2014년에 1만 3,330원으로 2013년 대비 17.95% 감소하였고, 그 이후 1.5~4.5%의 비율로 꾸준히 감소함

〈표 II-2〉 소득금액 대비 개인기부금(2012~2018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인 기부금	총소득금액 ¹⁾	445,722	478,093	530,922	575,064	616,223	671,796	720,634
	총소득 100만원당 기부금(원)	17,336	16,380	14,537	13,795	13,341	12,387	12,197
	총소득금액 대비 기부금 증가율		-5.51	-11.26	-5.10	-3.29	-7.16	-1.53
종합 소득자	종합소득금액	126,023	134,370	144,783	162,034	176,230	200,090	213,714
	종합소득 100만원당 기부금(원)	17,348	16,724	17,756	15,580	14,682	12,694	13,022
	종합소득금액 대비 기부금 증가율		-3.60	6.17	-12.26	-5.77	-13.54	2.59
근로 소득자	근로소득금액	319,699	343,723	386,139	413,030	439,993	471,706	506,920
	근로소득 100만원당 기부금(원)	17,332	16,246	13,330	13,094	12,805	12,257	11,850
	근로소득금액 대비 기부금 증가율		-6.26	-17.95	-1.77	-2.21	-4.28	-3.32

주: 1) 총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3-2-1〉 주요항목 신고 현황; 〈표 3-2-3〉 소득금액별 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 〈표 3-2-7〉 기부금 신고현황; 〈표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서 발췌하여 저자 정리

- 전체 소득신고 인원 중 기부금을 신고한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2016년 기간에 27.88%에서 22.73%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7년에 23.06%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음
- 종합소득신고자의 경우에도 2012~2016년 기간에 기부금신고 인원이 전체 소득신고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에서 12.2%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다소 증가하였음
 - 근로소득신고자의 경우에는 2013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세액공제가 시작된 2014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며, 종합소득신고자와 동일하게 2017년부터는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음

II. 우리나라의 기부금 현황 및 관련 제도 15

- 기부인원의 감소 추세와 달리 1인당 평균 기부금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음
 - 종합소득자의 경우, 2017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였고 근로소득자는 세액 공제로 전환되기 직전 연도인 2013년에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4~2016년 기간에는 증가하였음
 - 기부금 소득공제가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고액기부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조세지원 확대가 실질적으로 기부의 증가로 이어졌다면 기부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기부금은 증가할 수 있음
 - 고액기부 기준 금액을 2015년에는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18년에는 다시 1천만원으로 인하하였고 고액기부에 적용되는 공제율도 2015년에 25%에서 30%로 인상하였음

〈표 II-3〉 개인기부금 신고인원 및 1인당 기부금(2012~2018년)

(단위: 천명,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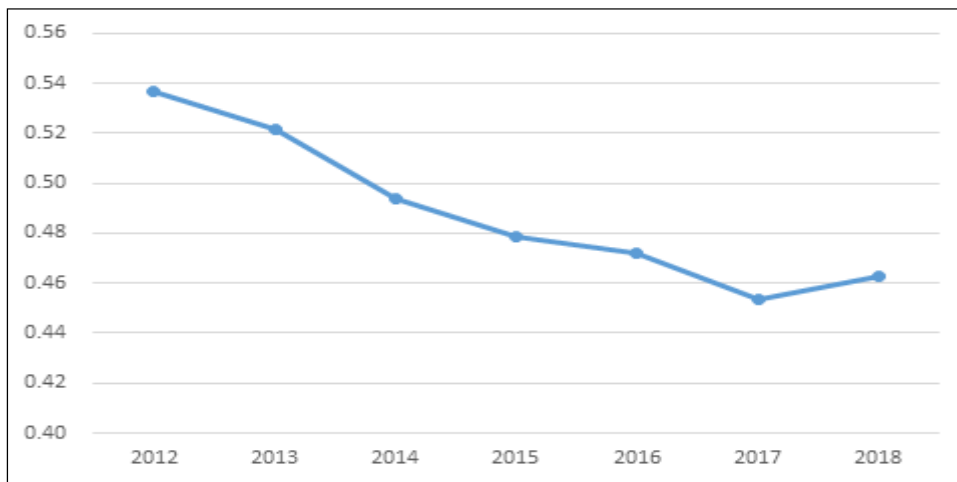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인 기부금	소득신고 인원	20,069	20,860	21,682	22,746	23,543	24,319	25,412	
	기부금 신고	인원	5,596	5,803	5,308	5,299	5,350	5,607	5,874
		비중	27.88	27.82	24.48	23.29	22.73	23.06	23.12
	1인당 기부금	금액	1,381	1,350	1,454	1,497	1,537	1,484	1,496
		증가율		-2.27	7.74	2.97	2.64	-3.42	0.83
종합 소득자	소득신고 인원	4,353	4,565	5,052	5,483	5,875	6,394	6,911	
	기부금 신고	인원	887	879,216	821,210	783,982	715,260	788,527	856,865
		비중	20.4	19.3	16.3	14.3	12.2	12.3	12.4
	1인당 기부금	금액	2,466	2,556	3,130	3,220	3,617	3,221	3,248
		증가율		3.65	22.48	2.86	12.34	-10.96	0.83
근로 소득자	소득신고 인원	15,716	16,295	16,630	17,263	17,668	17,925	18,501	
	기부금 신고	인원	4,709	4,924	4,487	4,515	4,635	4,819	5,018
		비중	30.0	30.2	27.0	26.2	26.2	26.9	27.1
	1인당 기부금	금액	1,177	1,134	1,147	1,198	1,216	1,200	1,197
		증가율		-3.61	1.15	4.43	1.47	-1.30	-0.2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3-1-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총괄; 〈표 3-2-7〉 기부금 신고현황; 〈표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서 발췌하여 저자 정리

- 우리나라의 명목 GDP에서 개인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0.54%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 0.45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즉 기부금 지출액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의 성장에 비해 개인기부금 지출은 감소였음을 의미함

[그림 II-1] GDP 대비 개인기부금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은행, 명목 GDP;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 중 종교기부금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국세청 통계자료는 종교기부금 규모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비중을 확인할 수는 없음⁷⁾
- 종교기부금 비중을 낮추고 기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본 연구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를 제외한 전반적인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논의함

7) 다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통해 확인한 종교기부금 비중은 전국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3~2017년 기간에 가계 기부금 지출 중 종교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9.9%, 89.0%, 88.7%, 88.3%, 84.9%로 나타났음(고영환·장영식·이연화·고금지·진재현·전지수, 『나눔실태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p. 101)

2.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가. 기부금의 정의 및 종류

-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함⁸⁾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에 포함됨⁹⁾
 -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30%를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임

-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의 종류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조세지원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법정기부금은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열거하고 있음¹⁰⁾
 -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음¹¹⁾

- 금전기부가 아닌 용역기부의 경우 자신의 재능을 이용한 재능기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재능기부의 경우 시가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

-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의 정의를 보면, 일반적인 용역기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8)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10)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11)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정의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의하는 기부금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의함
- 다만, 세법상 재난지역구호의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함)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과 기타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함¹²⁾
 -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8로 나누어 산출함
 - 부수적인 비용은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을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함
 -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함
- 현물기부는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에 포함됨

나.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

- 개인이 「소득세법」상 조세지원 대상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가 적용됨

12)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 사업소득만 있는 자 중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세액공제를 적용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함
 -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할 수 있음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때에는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서로 산입하며,¹³⁾ 각 기부금 종류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두고 있음
-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은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음¹⁴⁾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등의 합계액¹⁵⁾을 차감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10%에 Min[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의 합계액의 20%, 종교단체 외 기부금을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15) 기부금 등의 합계액이란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임

〈표 II-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구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정치자금기부금, ¹⁾ 법정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²⁾ - 이월결손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 등의 합계액 ³⁾) × 30%
	종교단체기부금 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 등 합계액) × 10% + Min[(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 등 합계액) × 20% 종교단체 외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주: 1) 10만원 이하 정치자금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함

2)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임

3) 기부금 등의 합계액이란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임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¹⁶⁾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함

□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 외에 종합소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음¹⁷⁾

○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세액공제 대상자에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

16) 「소득세법」 제34조 제5항

17) 삼일아이닷컴,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해설」, http://www.samili.com/tax/jomunhaesul/explain_tax.asp?code=2-20&jo=59.4&treejo=0#content_body, 검색일자: 2020. 6. 17.;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해설

원 등(「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자)은 포함함

- 2014년 12월 23일 법 개정을 통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중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경우에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이러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 동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함

○ 세액공제 방식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기부금부터 적용함

□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 외에 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으로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거주자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합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나이 요건이 있었으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20일 법 개정을 통해 나이 요건을 폐지하였고, 2017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 및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함

□ 기부금 세액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에서 사업소득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¹⁸⁾

○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함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모두 있는 경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함

□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하지만,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의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함¹⁹⁾

18)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19)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지정기부금의 공제대상 기부금 한도액은 소득금액의 30%임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기부금 한도액은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제외)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임

〈표 II-5〉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한도 및 공제율

기부금 종류	공제대상 기부금 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금액 ¹⁾ 의 100%	- 10만원 이하: 100/110 - 10만원 초과: 15% - 3천만원 초과: 25%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²⁾ 의 100%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소득금액 ³⁾ 의 30%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 ⁴⁾ 의 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① + ② ① 소득금액 ⁴⁾ 의 10% ② Min[소득금액 ⁴⁾ 의 20%, 종교단체 외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주: 1)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며,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임
 2)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며, 이월결손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임
 3)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며, 이월결손금과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임
 4)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며, 이월결손금과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2014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의 인하 및 공제율의 상향 조정이 있었음

II. 우리나라의 기부금 현황 및 관련 제도 23

-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당시 고액기부의 기준금액인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2015년 12월 15일 세법 개정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였고, 고액기부의 공제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였음²⁰⁾
 - 2018년 12월 31일 세법 개정에서는 30%의 높은 공제율의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였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하였음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명세서(인터넷 증빙서류 포함) 및 기부금영수증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²¹⁾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²²⁾
 - 인터넷 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 표기에 관한 사항
 -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 암호화코드·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터넷 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소득세법」상 현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개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지정기

20) 삼일아이닷컴,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해설」, http://www.samili.com/tax/jomunhaesul/explain_tax.asp?code=2-20&jo=59.4&treejo=0#content_body, 검색일자: 2020. 6. 17.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부금을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하고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로 함²³⁾

- 장부가액이란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이고, 건물의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임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현물기부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정기부금과 동일한 방식
으로 개선할 것을 포함하고 있음²⁴⁾

다. 출연재산에 대한 조세지원²⁵⁾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 면제됨²⁶⁾

- 공익법인에 직접 출연하는 경우와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모
두 해당함
-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출연하여야 하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함²⁷⁾

□ 그러나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 및 10%(20%)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 과세면제를 배제함

- 이는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3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
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
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24)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2019.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
를 말하며, 출연행위에 의해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 함(임동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
상 지원제도 검토」, 『KERI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원, 2019, p. 11)

26)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국세청, 2020, pp. 92~97; 정정운, 『세법학 I』, 상경사, 2019,
pp. 1531~15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27)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한 경우에도 과세 면제를
적용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공익
법인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을 지주회사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과 다음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²⁸⁾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 ①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②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③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과세 면제를 배제함에 있어, 상호출자제한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에는 10% 또는 20%의 지분율을 적용함
 - 일반 성실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의 지분율을 적용함
 - ①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②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 를 목적으로 할 것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성실공익법인에 출연 하는 경우는 20%의 지분율을 적용함
- 성실공익법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 는지의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관할지방 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 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함²⁹⁾
 - 해당 공익법인 운용소득(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8) 2017. 1. 1. 이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5항; 정정운, 『세법학 I』, 상경사, 2019, p. 1534.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 출연자(출연일 현재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
 -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이행할 것
 -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를 이행할 것
- 공익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다음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비율 한도가 없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동일 것
 - 성실공익법인 등 또는 국가 등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것
 -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할 것
 - 주무관청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 초과보유분을 매각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동일 것
 -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 또는 20%를 초과하여 출연받고 초과 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할 것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3. 기부금 투명성 관리제도

가. 기부금단체의 범위

- 기부금단체란 비영리법인 중 기부금 조세지원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을 의미함
 - 「소득세법」상 기부금 조세지원이 적용되는 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구분되며,³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 면제가 적용되는 공익법인이 있음
- 법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열거된 법정기부금을 받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단체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단체³¹⁾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인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단체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및 연구비를 수령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임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단체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요건³²⁾을 모두 갖추어 주무관청이 추천하여 지정·고시한 단체임
-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와³³⁾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구분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기부금단체는 다음과 같음

30)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2020a, 국세청, pp. 172~175.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32) 요건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및 제4항에 열거하고 있음

33)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는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종교의 보급, 그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임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단체임
- 「상증세법」에서 명시하는 공익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함³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³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35)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개정일 2018. 2. 13.)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부금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를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포함하여 열거함으로써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의 범위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가 거의 일치하게 되었음³⁶⁾
-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법인세법」상 법정·지정 기부금단체,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명칭을 “공익법인 등”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이하 내용에서는 공익법인에 관한 규정을 기술함

나. 공익목적사용 의무

1)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 면제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가)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되는 재산가액 또는 이익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³⁷⁾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① 출연자 및 그 친족 ②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③

36) 김무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해산 단계에 따른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17.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항

①, ②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³⁸⁾

-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출연재산 가액
-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 가액

나)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의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³⁹⁾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그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주식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취득하는 주식
- 취득 당시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외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

□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및 사용기준 금액에 미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함

- 출연자산평가액 중 운용소득에서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사용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최소 비율 70%를 현재 성실공익법인 수준인 80%로 상향 조정하고, 미사용 시 출연재산 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음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① 직접공익목적 외 사용 및 3년 내 미달 사용하거나 ② 1년 또는 2년 내 미달 사용 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함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공익목적 외 사용분 및 미달 사용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60%에 미달하도록 사용한 경우,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함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

-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매년 출연재산 가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달 사용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⁴⁰⁾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2020a, p. 159

- 보유 비율별 사용기준 금액은 5~10% 보유 시 출연재산 가액의 1%, 10% 초과 보유 시 출연재산 가액의 3%임
 -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출연재산의 3% 미달 사용 시는 종전과 같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출연재산의 1% 미달 사용시는 미달 사용액의 10%와 추가로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2) 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지출 의무

- 「법인세법」에서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와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는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함

다. 회계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

1)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⁴¹⁾
 -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1) 「상증세법」 제50조

-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거나 사업의 특성상 의무대상이 되지 않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일정 규모 미만 공익법인 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함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 원 미만일 것
 -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2) 장부의 작성·비치

- 공익법인 등은 소득세 과세기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함⁴²⁾

3)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

-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⁴³⁾
- 보고서 등의 미제출, 누락, 잘못 기재된 보고서의 제출 등이 있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명확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함

42) 「상증세법」 제51조

43) 「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

4) 전용계좌 개설·사용

- 공익법인 등(사업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⁴⁴⁾
 -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1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해당)
- 전용계좌 개설 의무가 없는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함
-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5) 결산서류 등 공시

- 공익법인 등은 다음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⁴⁵⁾

44) 「상증세법」 제50조의2

45) 「상증세법」 제50조의3

- 재무제표
-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법인별·기부자별 기부자영수증 발급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함⁴⁶⁾
-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에는 그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함⁴⁷⁾

7)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의 보고

-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부금단체⁴⁸⁾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정기부금단체⁴⁹⁾는 일정 의무사항⁵⁰⁾ 이행 여부를 매사업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에

46) 「법인세법」 제112조의2

47) 「소득세법」 제81조의7;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4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6항

49)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9항

50) 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만 해당)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3)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에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함

- 지정기부금단체의 해당 의무는 2018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만 있었지만, 201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인 등도 동 의무를 지게 됨
- 과거 2년에 1번씩 제출하던 해당 서류를 2019년부터는 매년 제출하게 됨

-
- ④ 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⑤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⑥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⑦ 결산서류를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할 것(의무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⑧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외부 회계감사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정기부금단체는 ③, ⑤만 해당

Ⅲ. 주요국의 기부금 현황 및 관련 제도

1. 미국

가. 개인기부금 규모

- 기부금에 대한 보고서인 *Giving USA 2020*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개인이 지출한 자선기부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⁵¹⁾ 증가한 3,097억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개인기부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⁵²⁾
 - 전체 기부 규모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8.9%임
 - 미국의 2019년 기부총액은 4,496억달러로 추정되며, 기부 주체별로 보면 개인 3,097억달러, 재단 757억달러, 유산 432억달러, 법인 210억달러로 구성됨
 - 유산은 개인과 구분하여 기부 규모를 집계함
 - 2019년 개인기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임⁵³⁾
- 2019년 기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는데, 개인기부의 증가가 기부금 총액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함
 - 개인기부가 크게 증가한 데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S&P500의 28.9% 증가와

51)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증가율은 2.8%임

52) Church Executive, *Giving USA 2020: Data show 2019 one of the highest years for giving on record*, 2020. 6. 16., <https://churchexecutive.com/archives/giving-usa-2020-data-show-2019-one-of-the-highest-years-for-giving-on-record>, 검색일자: 2020. 8. 5.

53) GDP는 OECD.Stat의 “National Accounts”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2019년 GDP는 21조 3,332억달러임

GDP의 4.1% 성장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즉 개인의 자산 및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부 규모도 성장하였음

- 자선기부금을 받은 기관의 분야별로 보면, 종교가 28.5%로 가장 높고, 교육 14.3%,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s) 12.5%, 재단 11.9%, 보건 9.2%, 공공사회복지 8.3%, 국제 6.4%, 예술·문화·인문 4.8%, 환경과 동물보호 3.1%, 기타 1%로 구성됨⁵⁴⁾
- 자선지원재단(CAF)이 2019년 발표한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10년간 합산한 미국의 기부지수 종합순위는 1위이고, 이 중 금전기부 순위는 11위임⁵⁵⁾

나.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1) 기부금의 정의 및 종류

- 미국 세법상 자선기부금이란 다음 단체에 사용할 용도로 기부(contribution) 및 증여(gift)하는 것을 의미함⁵⁶⁾
 - 미국, 미국의 주 또는 미국령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 법인, 신탁, 펀드 및 재단으로 오로지 자선, 종교, 과학, 문학, 교육, 아동 및 동물 학대 예방 및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의 장려를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단체
 - 미국 또는 미국령에 조직된 신탁, 재단을 포함한 참전용사단체
 - 롯지시스템(lodge system)하에서 운영되는 협회
 - 특정 비영리 묘지회사
 - 미국, 미국의 주, 미국령 및 실질적으로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54) 각 분야별 기부금 비중은 개인기부금이 아닌 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55) CAF, *CAF World Giving Index-Ten Years of Giving Trends*, 2019.

56) IRC 170(c)

- 기부금은 자선기부금으로서 세제상 공제 가능한 기부금과 공제 불가능한 기부금이 있음⁵⁷⁾
 - 공제 가능한 기부금은 교회 및 종교단체, 연방, 주 및 지방정부, 비영리학교 및 병원, 구세군·적십자사 등 참전용사단체 등에 기부한 현금과 재산, 적격단체가 후원하는 학생과 함께 생활하며 지출한 비용, 적격단체에 자원봉사자로 봉사하면서 지출한 본인부담 비용 등임
 - 공제 불가능한 기부금은 시민리그, 노동조합 및 상공회의소, 외국조직(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자선단체 제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그룹, 법률 변경을 위해 로비하는 그룹, 주택소유자협회, 개인, 정치단체 및 정치후보자 등에 기부한 현금과 재산, 학비, 용역의 가치

- 용역기부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음

2)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

- 개인이 IRC §501(c)(3)에 따라 설립된 조직에 지출한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은 소득세 산출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일반적으로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⁵⁸⁾의 60%까지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⁵⁹⁾
 - 종전에는 최고 공제한도가 AGI의 50%였으나, 2017년 「세금감면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 60%로 조정되었음

- 기부금을 적용하는 한도는 기부하는 재산의 유형과 기부하는 적격단체(qualified organization)의 종류에 따라 결정됨
 -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액은 일반적으로 조정 총소득의 일정금액으로 제한하지

57) IRS, *Charitable Contributions*, 2019, p. 3.

58) 조정 총소득이란 총소득에서 각종 사업비용 등을 차감한 순소득을 의미함

59) IRS, 2019, p. 14.

만, 기준금액 자체가 감소되는 경우도 있음

- 자선기부금의 총 공제액은 AGI를 초과할 수 없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연도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함
- 기부금 공제가 적용되는 단체는 일반적인 적격단체와 그 외 적격단체로 구분할 수 있음
 - 적격단체에는 50%의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그 외 적격단체에는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
 - 일반적으로 자선기부의 경우 재산의 유형과 기부하는 단체의 유형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적용함
 - 기부하는 재산의 유형이란 현금기부 또는 현물기부(contribution of property)를 의미함
 - 기부하는 단체의 유형은 「연방세법」상 분류에 의함
 - 기부금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단체는 ① 적격단체(50% limit organization)와 ② 그 외 적격단체(Qualified Organization)로 구분함
 - 구호활동 등 특정 목적의 기부에 대해서는 조정 총소득의 100% 한도가 적용됨⁶⁰⁾⁶¹⁾

〈표 Ⅲ-1〉 미국의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기부받는 단체	공제방식	공제한도	이월공제
적격단체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기부: 60% •비현금기부, 자본이득자산(장부가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50% •자본이득자산(FMV로 공제하는 경우): 30% 	5년
그 외 적격단체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기부, 비현금기부: 30% •자본이득자산: 20% 	5년

자료: 본문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60) 100% 한도가 적용되는 특정 목적의 기부란 ① 농부와 목장주에 대한 적격보전기부금(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 ② 캘리포니아 산불 구호활동에 대한 적격기부금 ③ 2017년 및 2019년 재해를 위한 구호활동에 대한 적격기부금이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적격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고 이월된 기부금은 AGI의 60% 한도가 적용됨

61) IRS, 2019, p. 14~15.

- 기부금 공제는 개인이 소득신고할 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가) 적격단체에 대한 기부금

- 일반적으로 적격단체에 비현금성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50%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적격단체는 다음과 같음
 - ① 교회와 컨벤션 또는 교회협회
 - ② 정규 교직원과 커리큘럼이 있는 교육기관
 - ③ 병원 및 병원과 관련된 특정 의료연구기관
 - ④ 수령하여 투자 및 관리하고 이를 미국 정부 및 일반 대중으로부터 지원받는 주립 및 시립대학에 지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단체
 - ⑤ 미국 또는 모든 주,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령(푸에르토리코 포함) 등
 - ⑥ 공개적으로 지원되는 자선단체
 - ⑦ 공개적 지원의 자격은 없지만 기부자의 수에 제한이 없고 일반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등의 테스트를 충족하는 단체
 - ⑧ 상기 ①~⑦에 해당하는 단체에 의해 운영되거나 통제되고, 이들 단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단체
 - ⑨ 민간운영재단(Private operating foundations)
 - ⑩ 기부금을 수령한 다음 해의 2.5개월 이내에 기부금의 100%를 적격분배(qualifying distribution)하는 민간비운영재단(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s)
 - 자선기부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단이 적격분배했다는 증빙을 세금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⑪ ⑧에 기술된 재단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인 기부자가 펀드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를 지명할 권리가 있는 경우, 기부금이 공동기금(common fund)에 합쳐지는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

- 재단은 공동기금의 소득을 소득이 실현된 과세연도 다음 연도의 2.5개월 이내에 분배하여야 하고 기부자 사망 후(또는 기부자의 생존 배우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기부원금(corpus)을 분배하여야 함

- 적격단체에 현금기부를 하는 경우와 자본이득자산(capital gain property)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제한도를 적용함
 - 현금기부에 대해서는 6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
 - 예를 들어 교회에 현금기부한 경우 60%의 공제한도를 적용하지만, 공정시장가치 200달러에 해당하는 의류를 교회에 기부한 경우에는 비현금성 기부이므로 50%의 공제한도가 적용됨
 - 자본이득자산을 기부하면서, 공정시장가격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30%의 한도를 적용하고 장부가액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50%의 한도를 적용함⁶²⁾
 - 즉 해당 기부자산을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장기자본이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부금을 감액하는 경우(장부가액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조정 총 소득의 50%로 선택할 수 있음

나) 그 외 적격단체에 대한 기부금

- 그 외 적격단체에 지출한 현금 및 비현금기부는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
 - 자선단체가 사용하기 위한 기부도 30% 한도 규정을 적용함
 - 그 외 적격단체에 비현금성 자산인 자본이득자산을 기부하거나 적격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2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

3) 출연재산에 대한 조세지원

- 미국은 개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함에 있어 생존 시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

62) IRS, 2019, p. 16.

여세(Gift tax)를, 사후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유산세(Estate tax)를 부과함

- 증여세는 개인이 생애 동안 수증자에게 무상이전한 자산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자산의 시장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함⁶³⁾
 - 증여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자산의 사용 및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을 받을 권리 등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이전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함

- 미국 세법에서는 자선기부금에 기부와 증여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⁶⁴⁾
 - Dejong v. Commissioner, 309F. 2d 373(9th Cir, 1962) 사건에서 “기부(charitable contribution)”와 “증여(gift)”는 동의어임을 지지하였고, 이러한 판결 이후 법원들은 두 개념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음⁶⁵⁾

-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자에게 있지만, 증여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은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부받은 단체는 증여와 관련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자의 과세대상 증여가액(taxable gift)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공익성이 있는 다음 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한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⁶⁶⁾
 - 독점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특별구 등
 -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 예술 및 아마추어 스포츠경기 증진, 동물 및 아동학대 금지를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단체

63) 신상화·송은주·이성현, 『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 과세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40.

64) IRC §170(c)

65) 이상신,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15, p. 23.

66) IRC §2022(a)

- 이익이 개인이나 주주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입법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특정 후보를 위한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
 - 기부 및 증여받은 자산을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 동물 및 아동학대 금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501(c)(3)에 의한 면세단체
 - 단체의 소득이 개인이나 주주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퇴역군인단체
- 미국의 경우, 유산세는 상속재산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형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함
- 과세대상 유산은 유산의 총금액(Gross Estate)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을 산출함
 - 과세대상 유산을 산출함에 있어,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자산을 이전한 경우 금액의 제한 없이 공제함⁶⁷⁾
 - 공제 가능한 단체는 증여세와 동일함
- 주식의 출연에 대하여 보유지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민간재단의 의무규정 중 지분 초과보유 금지 규정에 의해, 일정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보유분의 10%에 해당하는 규제세를 부과함
- 일반적으로 민간재단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한도는 의결권 주식의 20%이나 예외규정에 의해 35%까지 보유할 수 있음⁶⁸⁾

다. 기부금 투명성 관리제도

1) 기부금단체의 범위

- 미국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종류와 법인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각 주정부에서 정함

67) IRC §2055(a)

68) 상세한 내용은 p. 47 '2) 공익목적사용 의무' 참조

- 다만 비영리단체에 소득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공익성 검증 등은 「연방세법 (Internal Revenue Code, IRC)」에서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연방세법」 §501(a)에서는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단체로 §501(c), §501(d), §401(a)를 열거하고 있음
 - §501(c)는 면세단체(exempt organization), 501(d)는 특정 종교단체, 401(d)는 적격연금 및 종업원주주제도(profit-sharing and stock bonus plan)를 규정함
- 미국 「연방세법」 §501(c)에서는 자선 및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중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29개의 면세단체를 열거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⁶⁹⁾
 - 의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 재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 문학, 교육, 국내 및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경기 장려, 동물 및 아동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자선단체
 - 사회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
 - 노동조합, 농업조합 및 원예조합
 - 상공회의사, 무역위원회, 프로축구리그 등
 - 레크리에이션 및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클럽
- 「연방세법」 §501(c)에서 열거하는 면세단체 중 §501(c)(3)에 해당하는 단체를 자선단체(charity organization)라 함⁷⁰⁾
 - 자선단체는 연방 소득세뿐만 아니라 유산세 및 증여세 과세 면제, 기부금 소득 공제 혜택도 부여함
 - 자선단체는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 문학, 교육, 국내 및 국제 아마추어 스

69) IRC 501(c)

70) 김학수·송은주·이형민·조승수, 『주요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p. 60; IRC 501(c)

포츠경기 장려, 동물 및 아동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법인, 공동모금(community chest), 기금, 재단 등임

- 해당 단체는 설립 시에 국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익성 테스트⁷¹⁾를 거쳐 자선단체로 승인·지정됨

□ 자선단체는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와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으로 구분됨⁷²⁾

- 일반적으로 공공자선단체로 분류되는 조직은 교회, 병원, 자격을 갖춘 의료연구 기관, 병원, 학교, 대학 등으로서, 적극적인 모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 대중, 정부기관, 기업, 민간재단 및 기타 공공자선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조직의 면세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며, 하나 이상의 공공자선단체와의 지원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
- 반면 민간재단은 하나의 주요 자금 공급원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 활동은 다른 자선단체와 개인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자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면세단체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 「연방세법」 §170(c)에서 열거하는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⁷³⁾

- 자선기부금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적격단체(Qualified Organizations) 유형에 대한 기부 및 증여를 의미함⁷⁴⁾
 - 미국, 미국의 주 또는 미국령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 법인, 신탁, 편

71) 공익성 테스트는 비영리조직의 활동이 종교, 자선, 과학 등의 활동인지 확인하는 조직 테스트(Organization Test)와 활동 목적이 정치 및 로비 활동이 아닌 「연방세법」상 목적인지 확인하는 운영테스트(Operational Test)로 구성됨

72) IRC § 509; IRS, "Public Charities",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charitable-organizations/public-charities>, 검색일자: 2020. 7. 14.

73) IRS, "Charitable Contributions," 2019, p. 2., <https://www.irs.gov/taxtopics/tc506>, 검색일자: 2020. 7. 14.; IRC §170(a)

74) IRC §170(c)

- 드 및 재단으로 오로지 자선, 종교, 과학, 문학, 교육, 동물 및 아동학대 예방 및 아마추어 스포츠경기 장려를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함
- 미국 또는 미국령에 조직된 신탁, 재단을 포함한 참전용사단체
- 롯지시스템(lodge system)하에서 운영되는 협회
- 특정 비영리 묘지회사
- 미국, 미국의 주, 미국령 및 실질적으로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 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적격단체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교회, 사원 및 종교단체, 비영리 자선단체
 - 비영리 교육기관, 비영리 병원 및 의료 연구기관
 - 유틸리티 회사의 비상에너지 프로그램, 비영리 자원봉사 소방회사
 - 공공 공원,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비영리단체
 - 민방위단체, 비영리 자원봉사 소방회사
 -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의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자선단체

2) 공익목적사용 의무

- 면세단체(tax-exempt organization)와 부적격자⁷⁵⁾ 사이의 초과이익거래(excess benefit transaction)가 발생한 경우 초과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규제세(excise tax)를 부과함⁷⁶⁾
- 해당 거래로 초과이익이 발생한 부적격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초과이익거래가 과세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초과이익의 200%에 해당하는 추가규제세(additional excise tax)를 부과함

75) 부적격자란 재단의 내부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임

- 재단의 창립자 및 실질적 기여자 또는 재단에 5천달러 이상(재단 총 기부금의 2% 이상) 기부한 자, 재단의 임원이나 유사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재단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자, 상기에 기술한 자의 가족 구성원, 상기에 기술한 기관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35% 이상 보유한 조직

76) IRC §4958: IRS, "Intermediate Sanctions - Excise Taxes,"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charitable-organizations/intermediate-sanctions-excise-taxes>, 검색일자: 2020. 7. 15.

- 면세단체와 부적격 간의 초과이익거래에 조직의 관리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초과 이익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조직 관리자에게 부과함
 - 이 세금은 단일 거래와 관련하여 세액은 2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적격자에게 25%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조직의 관리자가 고의로 참여했으며 합리적인 주의가 없었을 경우에만 부과됨
 - 초과이익거래란 면세단체에 의해 부적격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가치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이 직·간접적으로 부적격자에게 제공되는 거래임⁷⁷⁾
-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유형의 이행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세금(excise tax)이 부과됨⁷⁸⁾
- 민간재단과 실질적인 기부자 간의 자기거래 금지(Self-Dealing Rules)
 - 재단이 매년 자선 목적으로 소득을 분배해야 하는 의무지출(Mandatory Distributions)
 - 지분 초과보유 금지(Excess Business Holding)
 - 위험투자 금지(Jeopardizing Investment)
 - 과세대상 지출 금지(Taxable Expenditures)
- 자기거래란 민간재단과 부적격자(disqualified person) 간의 거래를 의미함⁷⁹⁾
-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금지된 거래의 10% 상당액이 과세되고 과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2차로 200%의 세금이 부과됨
 - 민간재단과 재단의 내부자 간에 피해야 할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재산의 판매, 교환 및 임대, 자금의 대출 및 신용 거래,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

77) IRS, "Intermediate sanctions-excess benefit transactions,"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charitable-organizations/intermediate-sanctions-excess-benefit-transactions>, 검색일자: 2020. 7. 15.

78) IRS, "Private Foundation Excise Taxes,"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private-foundations/private-foundation-excise-taxes>, 검색일자: 2020. 7. 15.

79) Foundation Source, "Self-Dealing Rules & Penalties," <https://foundationsource.com/manage-your-foundation/private-foundation-self-dealing-rules-penalties-foundation-source/>, 검색일자: 2020. 7. 15.

민간재단에 속한 소득 및 자산의 사용 등 공무원에 대한 금전의 지불 동의
- 재단의 창업자가 제공하는 임대료 없는 사무실, 임원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
재단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은 허용됨

- 의무지출이란 민간재단이 다른 자선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자선목적으로 매년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재산을 소비해야 하는 규정임⁸⁰⁾
 - 즉 최소투자수익(minimum investment return, 순투자자산의 5%)을 매년 고 유목적사업에 지출·분배하여야 함⁸¹⁾
 - 지출(분배) 가능한 금액을 적시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 미달 지출액에 대해 30%의 규제세가 부과되며, IRS로부터 최소지출을 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부족한 지출을 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으로 100%의 세금이 부과됨
 - 지출(분배) 가능한 금액이란 적격분배로 수취하였거나, 발생한 금액과 자산의 처분으로 수취하였거나, 발생한 금액에서 소득세 등을 차감한 최소투자수익임

- 지분 초과보유 금지란 민간재단이 기업의 허용 가능한 지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민간재단과 그 재단의 부적격자가 공동으로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한도는 의결권 주식의 20%이나, 다음의 두 가지 예외 규정이 있음⁸²⁾
 - 부적격자가 아닌 한 명 이상의 제3자가 법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민간재단과 재단의 모든 부적격자의 보유 지분을 합해서 최대 35%까지 보유할 수 있음
 - 민간재단이 의결권 주식의 2% 이하이면서 모든 유형의 유통주식 가치의 2%

80) IRS, "Taxes on Failure to Distribute Income - Private Foundations,"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private-foundations/taxes-on-failure-to-distribute-income-private-foundations>, 검색일자: 2020. 7. 15.

81) 김학수 외, 2017, p. 74.

82) IRS, "Excess business holdings of private foundation defined,"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private-foundations/excess-business-holdings-of-private-foundation-defined>, 검색일자: 2020. 7. 15.

이하를 소유할 수 있음

- 세액은 민간재단이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지분의 10%임⁸³⁾
 - 초과보유액은 과세연도 중 초과보유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초과보유 정정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최초 부과된 세금이 경감됨
 - 최초 세금 부과 후 당해 과세기간 말까지 처분하지 않은 경우 초과보유액의 20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정정기간 내에 처분 시 추가된 세금은 경감됨

- 민간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재정적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경우, 그 위험한 투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 위험한 투자란 마진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상품선물거래, 유정 및 가스정(oil and gas wells)에 대한 투자, 풋·콜·스트레들과 같은 파생상품 등임
 - 세액은 위험한 투자에 투자된 금액의 10%이고, 첫 번 과세가 이루어지고 해당 과세연도 기간에 해당 투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관련 금액의 25%가 추가로 부과됨
 - 세액은 투자 원금과 소득 모두에 적용됨
 - 위험한 투자에 고의적으로 또는 합리적 주의 없이 참여한 모든 관리자에게도 10%의 세금이 부과되고, 1차 과세 후 수정 기간 내에 위험한 투자의 회수에 동의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10%의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됨
 - 관리자에 대한 세액의 한도는 1차 세금은 1만달러, 추가세금은 2만달러임

- 민간재단이 과세대상지출을 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 과세대상지출이란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로비), 특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보조금 지급 책임이 없는 재단에 대한 보조금, 종교·자선·과학·문학·교육 및 국가 및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경기 증진과 동물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목적 외의 지출을 의미함⁸⁴⁾

83) IRS, "Taxes on Excess Business Holdings,"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private-foundations/taxes-on-excess-business-holdings>, 검색일자: 2020. 7. 15.

84) IRS, "Private Foundation Taxable Expenditures: "Taxable Expenditures" Defined",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private-foundations/private-foundation-taxable-expenditures>, 검색일자: 2020. 7. 15.

- 세액은 과세대상 지출액의 20%이고, 과세기간 내에 지출이 수정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의 100%가 추가로 부과됨⁸⁵⁾
 - 재단 관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지출에 동의한 경우 경영진에게도 5%의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한도액은 1만달러임
 - 지출 수정에 동의하지 않은 관리자는 지출의 50%를 추가로 과세하고 과세한도액은 2만달러임

3) 회계 투명성 및 정보공개

- 미국 세법 §501(a)에 의해 과세가 면제되는 조직은 연간총소득(gross income), 수입과 지출(receipts and disbursements) 및 기타 정보를 명시한 연차보고서(annual return)⁸⁶⁾를 제출하여야 함⁸⁷⁾
 - 다만 교회 및 교회의 협회,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gross receipt) 5천달러 이하인 특정단체, 독점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단체는 연차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 특정단체란 종교단체·교육기관·동물 및 아동학대 방지단체 등으로서, IRC 509(a)에서 규정하는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 외의 단체
- 미국 세법 §501(c)(3)에 기술된 자선단체는 다음의 정보를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함⁸⁸⁾
 - 당해 과세연도의 총소득과 소득과 관련된 비용, 당해 연도의 면세목적의 지출(disbursement), 해당 연도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표시한 대차대조표
 - 해당 연도 동안 받은 기부금과 증여의 총액 및 실질적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private-foundations/private-foundation-taxable-expenditures-taxable-expenditures-defined, 검색일자: 2020. 7. 15.

85) IRS, "Taxes on Jeopardizing Investments,"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private-foundations/taxes-on-jeopardizing-investments>, 검색일자: 2020. 7. 15.

86) Form 990, 990-EZ, 990-PF

87) IRC §6033(a)(1)

88) IRC §6033(b); 김학수 외, 2017, pp. 69~70.

- 재단 관리자 및 고임금 종업원의 이름과 주소, 연간 보수 및 기타 지급액
 - 해당 단체가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로비활동 관련 지출
 - §501(c)에 기술된 다른 조직과의 직·간접적인 이전지출에 관한 기타 정보
 - 내국세 입법의 수행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로비활동 지출과 관련하여, 해당 조직뿐만 아니라 관련 그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501(a)에 의해 연방소득세 과세가 면제되는 조직(exempt organization)에 요구되는 연차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penalty)가 부과됨⁸⁹⁾
-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로부터 1일당 20달러의 가산세(penalty)가 부과되며, 최대 가산세는 1만달러 또는 총수입(gross receipt)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단체의 총수입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조직의 경우, 1일당 가산세는 100달러이고 최대 한도는 5만달러임
 - 미국 국세청이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날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직 내 개인에게는 1일당 10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최대 한도는 5천달러임
 -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는 경감될 수 있음
 -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면세단체가 3년 연속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세단체 자격을 상실함
- 모든 비영리단체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1년에 연방기금으로 75만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자선단체(charitable nonprofit)에 특별감사가 요구됨⁹⁰⁾

89) IRC §6652(c)(1)(A); IRS, "Annual Exempt Organization Return: Penalties for Failure to File,"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annual-exempt-organization-return-penalties-for-failure-to-file>, 검색일자: 2020. 7. 14.

90) National Council of Nonprofit, "Nonprofit Audit Guide," <https://www.councilofnonprofits.org/nonprofit-audit-guide/need-independent-audit>, 검색일자: 2020. 7. 14.

- 또한 많은 주정부에서 자선활동 및 기금 모금을 위한 주정부 등록 시 감사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음

2. 일본

가. 개인기부금 규모

- 일본의 기부 관련 보고서인 『寄付白書(Giving Japan) 2017』⁹¹⁾에 따르면, 2016년 개인기부 총액은 7,756억엔 규모이며, 명목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0.14%임⁹²⁾
- 일본의 개인기부 규모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증가 추세를 보임
- 2009년 5,455억엔, 2010년 4,874억엔, 2011년 1조 182억엔, 2012년 6,931억엔, 2014년 7,409억엔, 2016년 7,756억엔임
 - 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2009년 0.11%, 2010년 0.10%, 2011년 0.21%, 2012년 0.14%, 2014년 0.14%, 2016년 0.14%임⁹³⁾
- 자선지원재단(CAF)이 2019년 발표한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10년간 합산한 일본의 기부지수 종합순위는 107위이고, 이 중 금전기부 순위는 64위임⁹⁴⁾

91) 『寄付白書』는 만 20~79세를 대상으로 표본(9,678개)을 추출하여 인터넷조사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임

92)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調査研究(寄付白書)』, <https://jfra.jp/research>, 검색일자: 2020. 8. 5., 『寄付白書 2017』을 요약·정리한 해당 페이지를 참조함

93) 日本 内閣府, “2018年度国民経済計算”에 포함된 GDP자료 사용하여 산출함.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kakuhou/files/h30/h30_kaku_top.html, 검색일자: 2020. 8. 5.

94) CAF, “CAF World Giving Index-Ten Years of Giving Trends”, 2019, <https://www.cafonline.org/about-us/publications/2019-publications/caf-world-giving-index-10th-edition>, 검색일자: 2020. 8. 5.

나.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1) 기부금의 정의 및 종류

- 기부금은 금전, 물품 기타 경제적 이익의 증여 또는 무상 공여를 의미함⁹⁵⁾
 - 일반적으로 기부금, 각출금, 위문금 등으로 불리는 것은 기부금에 포함됨
 - 한편 '교제비 등'은 고객과 공급업체 등 기타 사업에 관계있는 자에 대한 접대, 향응, 위안, 선물 등의 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증여한 경우에 그것이 기부금이 될지 아니면 교제비 등이 될지는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됨
 - 사회사업단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출과 같이 사업에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임
- 현물기부(토지 건물 등)는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되나 용역기부에 대해 기부금으로서 조세지원을 하는 규정은 없음

2)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

-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의 조세지원이 적용됨⁹⁶⁾
 - 정당이나 정치자금단체, 인정 NPO법인, 공익사단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로 소득공제하거나 기부금특별공제로 세액공제 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함⁹⁷⁾

95) 日本 国税庁, 「No.5262 交際費等と寄附金との区分」,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262.htm>, 검색일자: 2020. 7. 23.

96) 日本 国税庁, 「寄附金を支出したとき」,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4_3.htm, 검색일자: 2020. 7. 16.

97) 과거에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했으나, 2011년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선택적 적용방식을 도입하였음

- 특정 기부금의 기부금공제액은 당해 연도에 지출한 특정 기부금의 합계액에서 2천 엔을 차감한 금액임
 - 당해 연도 지출한 특정 기부금의 합계액은 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함
 - 기부금공제액 = 당해 연도 기부금의 합계액 - 2천엔
 - 기부금의 합계액은 소득금액의 40% 상당액을 한도로 함⁹⁸⁾
 - Min[특정 기부금의 합계액, 소득금액의 40%] - 2천엔

- 특정 기부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음
 -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널리 일반에게 모집하고 공익성 및 긴급성이 높은 것으로 재무대신이 지정한 것
 -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 공공법인 중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 공익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그 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에 관계된 기부금
 - 특정공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지출한 금전
 - 재무대신의 증명을 받은 특정 공익신탁 중 그 목적이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 공익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지출한 금전
 - 인정 NPO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 인정 NPO법인 등이란 관할기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 NPO법인을 의미하며, 인증 유효기간 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적용함

98) 종전에는 공제 가능 한도액을 소득금액의 25%에서 2005년에는 30%로, 2007년에는 40%로 인상하였고, 기부금 적용 하한액은 종전 1만엔에서 2006년에는 5천엔으로, 2010년에는 2천엔으로 인하하였음. 따라서 과거에는 1만엔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한해 조세지원이 적용되었다면 현재는 2천엔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조세지원이 적용됨

-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금
 - 개인이 정당, 정치자금단체, 특정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기부금
 - 특정 신규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등
- 기부금특별공제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 정당 등에 지출한 기부금
 - 세액공제액 = (당해 연도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 합계액 - 2천엔) × 30%
 - 인정 NPO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
 - 세액공제액 = (당해 연도 인정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합계액 - 2천엔) × 40%
 - 공익사단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
 - 세액공제액 = (당해 연도 공익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 합계액 - 2천엔) × 40%
- 기부금특별공제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있음
- 세액공제액의 산출 시 각 기부금의 합계액은 소득 금액의 40%를 한도로 함
 - 정당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세액공제액 한도액은 당해 연도 소득세액의 25% 상당액임
 - 인정 NPO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과 공익사단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세액공제 합계액은 당해연도 소득세액의 25% 상당액임

〈표 III-2〉 일본의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소득공제 시 공제한도	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
Min[특정 기부금의 합계액, 소득금액의 40%] - 2천엔	①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 (기부금 합계액 ¹) - 2천엔) × 30% ② 공익사단법인 등, 인정 NPO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기부금 합계액 ¹) - 2천엔) × 40%

자료: 日本 国税庁, 「寄附金を支出したとき」,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4_3.htm, 검색일자: 2020. 7. 22.

- 일반적으로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

시점의 시가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기부금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됨⁹⁹⁾

-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부가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 향상, 사회복지에 대한 공헌, 기타 공익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국세청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임
- ‘공익법인 등’이란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특정일반법인¹⁰⁰⁾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임¹⁰¹⁾

3) 출연재산에 대한 조세지원

- 상속이나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특정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특정공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지출한 경우, 그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제도가 있음¹⁰²⁾
- 특례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① 기부한 재산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고 ②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기부하여야 하며 ③ 기부받은 단체가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교육·과학의 진흥 등에 공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정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특정공익법인이어야 함
 - 설립을 위한 기부금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익법인이어야 함
- 다음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기부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특정공익법인 또는 특정공익신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나 그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99)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100)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 중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

101)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이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

102) 日本 国税庁, 「No. 4141 相続財産を公益法人などに寄附したとき」,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ozoku/4141.htm>, 검색일자: 2020. 7. 23.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 제1항, 제10항

- 기부한 사람 또는 기부한 사람의 친족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감소하게 된 경우

- 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공익법인이란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 향상, 사회복지 및 기타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다음의 법인임
 -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인정 NPO법인
 -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시험연구, 병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에 한함), 공립대학법인, 자동차안전운전센터, 일본사법지원센터, 일본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 일본적십자사, 특정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갱생보호법인

- 기부한 사람 또는 기부한 사람의 친족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면제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¹⁰³⁾
 - 이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 이전을 통한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개인이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에 증여한 사람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부받은 공익법인 등을 개인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함
 -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였는지는 다음의 요건¹⁰⁴⁾ 충족여부로 판단함(부당감소 요건)
 - 지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의 운영조직이 적정하고, 정관 등에 증여 또는 유증자의 친족 등이 이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규정할 것
 - 증여 또는 유증자, 법인의 임원, 사원 및 그들의 친족 등에게 시설의 이용, 금전의 대부, 자산 양도, 급여의 지급, 임원 선임, 기타 재산의 운용 및 사업의 운영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

103) エヴェィス会計法律事務所, 「一般社団法人等に関する相続税・贈与税の見直し - 平成30年度税制改正 -」, <https://www.e-zeirisi.com/ippansyadan-h30kaisei-12213.html>, 검색일자: 2020. 7. 23.

104)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정관 등에서 법인 해산의 경우 잔여 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공익법인에 귀속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 해당 공익법인에 공익에 반하는 사실이 없을 것

다. 기부금 투명성 관리제도

1) 기부금단체의 범위

- 일본의 경우, 민간부문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설립근거에 따라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비영리형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 NPO법인 및 인정 NPO법인,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구분함¹⁰⁵⁾
 - 특별법에 의한 법인¹⁰⁶⁾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설립단계에서는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과 NPO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 중 공익인증을 받은 법인은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이 되고, NPO법인 중 그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이 공익증진에 이바지하여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은 인정 NPO법인이 되어 이들 법인에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짐

2) 공익목적사용 의무

- 일반사단·재단법인이 세제 혜택이 있는 공익사단·재단법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인정기준¹⁰⁷⁾에 부합하여야 함¹⁰⁸⁾
 - 공익인정기준으로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수지상상(収支相

105) 김학수 외, 2017, pp. 77~84.

106)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갱생보호법」에 의한 갱생보호법인,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법」에 의한 종교법인임

107) 「공익법인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18호

108) 中田ちず子 編著, 『非営利法人の税務、会計』, 大蔵財務協会, 2015, pp. 229~249.

償), 유희재산의 보유 제한, 공익목적사업의 비율 규정이라는 세 가지 재무기준을 두고 있음

- 이상의 재무기준은 매년 충족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며, 결산 시 이 재무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공익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의 수지상상이란 공익사단·재단법인의 당해 공익목적사업에 관련된 수입은 그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임¹⁰⁹⁾
- 수입에는 공익목적사업에 관련된 경상수익, 공익에 관련된 기타 경상수익, 공익에 관련된 특정비용준비자금 사용액, 수익사업 등의 이익을 공익에 전입한 금액(이익의 50%)의 합계임
 - 비용은 공익목적사업에 관련된 경상비용, 공익에 관련된 기타경상비용, 공익에 관련된 특정비용준비금 적립액의 합계임
- 공익목적사업의 비율 규정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전체 비용 중 공익목적사업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¹¹⁰⁾
- 전체 비용은 공익사업비용, 수익사업비용, 관리운영비용을 합한 총 비용이며, 각각의 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공익사업 사업비, 수익사업 사업비, 관리비를 기초로 산출함
 - 다음의 비용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더라도 공익목적사업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비용에 가산함
 - 자가소유 토지를 사용한 경우 통상의 임차료에서 당해 토지의 사용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 무이자 또는 저리대부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차입에 의해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무상노무 제공의 경우 실제 필요한 대가를 고려하여 계산

109) 中田ちず子 編著, 2015, pp. 240~244; 「공익법인인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110) 「공익법인인정법」 제5조 제1항 제8호

- 유휴재산의 보유제한이란 공익법인의 매사업연도 말일의 유휴재산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공익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임
 - 유휴재산이란 공익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 등의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재산액을 의미함¹¹¹⁾

3) 회계 투명성 및 정보공개

- 일본은 2000년 12월에 시행된 공익법인제도 개혁 관련 3법에 의해 새로운 공익법인제도가 시작되었음¹¹²⁾
 - 공익법인제도 개혁의 목적은 “민간 비영리 부문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주무 관청의 재량권에 근거하는 허가의 불명료성이라는 종전의 공익법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있음
 - 새로운 공익법인제도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어느 조직이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등기 수속(준칙주의)만으로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하, ‘일반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
 - 일반법인 설립 후 ‘공익 인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일반법인 가운데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 법인 인정법」이라고 함)」이 규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은 내각총리 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공익 인정을 받아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함)이 될 수 있음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국가의 공익인정위원회 내지는 도도부현의 기관(국가 및 등 도부현의 기관을 총칭해 ‘공익인정위원회’라고 함)에서 실시함

- 일본의 공익인정제도는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의 자선단체위원회(Charity

111) 中田ちず子 編著, 2015, p.249; 「공익법인인정법」 제16조 2항

112) 尾上選哉, 「新公益法人制度における情報開示制度」, pp. 91~92., <https://www.o-hara.ac.jp/grad/pdf/annual/14/05.pdf>, 검색일자: 2020. 8. 4.

Commission)에 의한 민간 공익활동을 실시하는 조직의 등록제도(registered charity)를 모델로 한 것으로, 공익 인정 등 위원회가 일반법인이 실시하는 공익목적사업 및 조직체제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임

- 즉 공익법인은 일반법인과 비교하여 민간 비영리활동의 담당자로서, 사회적 신용을 부여받은 법인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익법인에는 기업 등 보통법인이나 일반법인에 비해 우대받는 세제상 특별조치가 적용됨
 -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정기적인 서류 제출 및 정보공개 의무를 공익법인에 부과하고 있음
 - 공익법인은 정기적으로 행정청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은 자료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 행정청은 공익법인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익법인에 그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 상황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¹¹³⁾
 - 공익법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예산에 관한 서류인 '사업계획서 등'과 결산에 관한 서류인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제출서류'임¹¹⁴⁾
 - 사업계산서 등이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자금조달 및 설비투자 계획을 기재한 서류로,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제출서류란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 상황의 개요, 법인의 기본정보 및 조직에 관한 서류, 법인의 사업에 관한 서류, 법인의 재무에 관하여 공익인정기준에 관한 서류, 기타 서류(재산목록, 임원명부, 임원보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현금흐름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113) 「공익법인인정법」 제27조 제1항

114) 中田ちず子 編著, 2015, p. 273.

- 행정청은 열람 청구가 있는 경우, 공익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을 열람하도록 제공하여야 함¹¹⁵⁾
 - 행정청 홈페이지상에서도 열람 청구가 가능함
 - 열람하기 위해서는 ① 청구자의 성명 ② 청구자의 이메일 주소 ③ 청구할 법인명 및 청구자료명 ④ 열람 예정일 등을 미리 등록해야 하며, 열람 예정일에 열람용 URL을 기재한 메일이 시스템으로부터 송신되어 해당 URL의 링크처에서 청구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 공익법인 및 일반법인은 대차대조표(대규모 법인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공고할 의무가 있음¹¹⁶⁾
 - 공고방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공시도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음
 - 대차대조표 외의 서류 공개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음

3. 영국

가. 개인기부금 규모

- 영국자선재단(CAF)의 2018 세계기부지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기부지수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꾸준히 10위권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¹¹⁷⁾

115) 尾上選哉, 「新公益法人制度における情報開示制度」, pp. 95~97; 「공익법인인정법」 제22조 제2항

116) 全国公益法人協会, 「情報公開の必要性」, <https://www.koueki.jp/disclosure/gaiyou.html>, 검색일자: 2020. 7. 24.

117) 오양래, 「영국자선재단(CAF)의 2018 세계기부지수(2)」, 나눔문화연구소, 2019. 9. 30., <http://www.nanumresearch.or.kr/%EB%82%98%EB%88%94%ED%86%B5%EA%B3%84/%EC%98%81%EA%B5%AD%EC%9E%90%EC%84%A0%EC%9E%AC%EB%8B%A8caf%EC%9D%98-2018-%EC%84%B8%EA%B3%84%EA%B8%B0%EB%B6%80%EC%A7%80%EC%88%98-2/>, 검색일자: 2020. 8. 9.

- 영국의 소득세 기본세율이 20%로 경감된 2008년부터 약 10년간 개인기부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현금기부 유형인 현금선물형 기부(Gift Aid)와 급여를 통한 기부(Payroll Giving)¹¹⁸⁾의 기부금 총액이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개인기부금 유형 중 현물기부의 기부금 추이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개인기부금 전체 추이를 단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영국 개인기부의 대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Gift Aid의 기부금액이 총액 기준 2008~2009년 약 43억파운드에서 2018~2019년 67억 6천만파운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Payroll Giving의 경우 2012~2013년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 기부금액과 기부자 수의 감소·증가 추세가 일정하지 않으나, 최근 5년 간은 계속 기부금액이 약 1억 3천파운드를 상회하며, 기부자 수는 모두 100만명을 넘음

〈표 III-3〉 영국의 개인기부금 규모

(단위: 천명, 백만파운드)

연도	Gift Aid 기부금 ¹⁾²⁾			Payroll Giving 기부금 ³⁾	
	개인 기부금	Gift Aid 지급	기부금 총액	개인 기부금	기부자 수
2008~09	3,350	950	4,300	104	754
2009~10	3,570	1,010	4,580	106	724
2010~11	3,830	1,080	4,910	114	720
2011~12	3,970	1,060	5,020	122	735
2012~13	4,130	1,040	5,170	155	1,023
2013~14	4,200	1,050	5,250	134	1,120
2014~15	4,790	1,200	5,990	126	1,094
2015~16	5,050	1,260	6,320	131	1,113
2016~17	5,080	1,270	6,340	131	1,070
2017~18	5,050	1,260	6,310	137	1,034
2018~19	5,410	1,350	6,760	132	1,086

주: 1) Gift Aid 기부금이란 기부금단체에 대한 개인기부금을 세후금액으로 보아 그 기부금과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Gift Aid 지급)을 기부금단체에 총액으로 전달하는 방법임

2) Gift Aid 기부의 건수나 기부자 수에 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음

3) Payroll Giving 기부란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고용인이 기부금을 차감하여 기부금단체에 전달하는 기부

자료: 영국 정부, "Table 3-UK Gift Aid and covenant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gift-aid-donations-amounts>, 검색일자: 2020. 8. 9.; 영국 정부, "Table 8-UK payroll giving scheme,"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payroll-giving-schemes>, 검색일자: 2020. 8. 9.

118) Gift Aid와 Payroll Giving은 p. 65 '나.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에서 자세히 설명함

나.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1) 기부금의 정의 및 종류

- 개인은 적격 자선단체 또는 지역사회 아마추어 스포츠클럽(Community Amateur Sports Clubs, 이하 CASCs)에 기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이 기부하는 방식은 크게 현금선물형 기부(Gift Aid), 급여를 통한 기부(Payroll Giving), 토지·자산·주식의 기부로 나눌 수 있음
 - CASCs에 대한 기부는 오직 현금선물형 기부를 통한 때만 조세 혜택이 적용됨

2)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

- 영국의 개인기부에 대한 기부금 공제방식과 한도는 기부금 유형에 따라 달라짐
 - 현금선물형 기부는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 기본세율만큼의 조세까지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은 기부금액의 그로스-업(Gross-up) 금액을 지정 단체에 전달하고 기부한 개인에게는 그로스-업 금액이 세금을 감면해 준 것으로 처리함
 - 기부금액의 한도는 개인이 기부하는 연도에 납부한 소득세액과 자본이득세액까지이며, 이를 초과하여 기부하면 차액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 고세율 및 최고세율 구간의 기부자는 기본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음
 - 급여를 통한 기부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지급되기 전에 기부금이 소득공제로 차감되는 방식이고, 기부금액에 매년 Max[5만파운드, 조정 후 총소득×25%]의 한도가 존재함
 - 현물기부, 즉 주식 또는 부동산 기부에 대하여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해 줌

〈표 III-4〉 영국의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기부금 유형	조세지원 내용
현금선물형 기부 (Gift Aid)	- 기본세율 구간의 기부자에게는 세금 감면을 해 준 것처럼 처리하고 그 세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선단체나 CASCs에 지급함 - 고세율·최고세율 구간 기부자는 기본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급 신청하여 환급받음
급여를 통한 기부 (Payroll Giving)	- 근로소득에서 지정 기부금액만큼 소득공제됨 (매년 소득공제 금액은 5만파운드와 개인의 조정 후 총소득의 25% 중 큰 금액까지로 제한함)
주식 또는 부동산 기부	- 기부 시점 자산의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기부로 인하여 얻은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자본이득세를 면제함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가) Gift Aid

- Gift Aid(현금선물형 기부)는 개인이 영국 자선단체나 CASCs에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해 기본세율(20%)¹¹⁹⁾만큼 세금을 차감한 것처럼 처리하고, 기부받는 자선단체들이 국세청에 Gift Aid 지급을 청구하여 받는 총 수령액은 원 기부금에 해당 세액을 더한 금액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임¹²⁰⁾¹²¹⁾
-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개인이 기부한 경우, 원래 기부한 금액에 100/80을 곱한 그로스-업 금액을 총 기부금으로 기부금단체에 전달함
 - 예를 들어 기부금 100파운드에 대해 125파운드 중 기본세율 20%에 해당하는 25파운드는 개인에게 세금 감면된 것처럼 간주하고, 기부자 지정 자선단체에

119) 영국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음

- 1만 2,501파운드~5만파운드: 20%
- 5만 1파운드~15만파운드: 40%,
- 15만 1파운드~: 45%

120) 영국 정부, "Guidance-HS342 Charitable giving(20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able-giving-hs342-self-assessment-helpsheet/hs342-charitable-giving-2020>, 검색일자: 2020. 6. 28.

121) 영국 정부, "Guidance - Chapter 3: Gift Aid,"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ies-detailed-guidance-notes/chapter-3-gift-aid>, 검색일자: 2020. 7. 8.

25파운드를 추가로 지급함

- 즉 125파운드를 기부할 때 25파운드만큼의 세금을 환급받고 100파운드를 실제 기부하는 것에서, 환급액까지 합하여 125파운드를 기부하는 것으로 바꾼 것임¹²²⁾

-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세금공제 혜택은 없으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는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의 25%를 추가로 더 받게 됨¹²³⁾

□ 고세율(40%)과 최고세율(45%)을 적용받는 기부자는 소득공제 시에 기본세율(20%)과 적용 세율의 차이만큼 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기부금을 받는 자선단체는 기본세율 부분에 대해서만 Gift Aid 지급을 청구하고 고세율(최고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부자에게 환급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기부자가 환급액까지도 기부하기로 선택하면 자선단체가 Gift Aid 지급금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음¹²⁴⁾

-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고세율(40%)을 적용받는 한 개인이 자선단체에 1,200파운드를 Gift Aid 형태로 기부한 경우 그의 기부금액은 1,500파운드(=1,200파운드×100/80)로 보고, 기본세율과의 차이만큼 환급 요청 시, 300파운드(=1,500파운드×(40%-20%))를 받을 수 있음

□ Gift Aid 방식으로 기부하는 기부자는 반드시 해당 연도에 적법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는 적어도 기부자의 기부금에 대하여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지급 청구하는 액수만큼은 납부되어야 함

- 납부세액이 자선단체의 지급 청구액에 미달하면 납세자인 기부자 개인은 그 차

122) 김진·박태규·손원익·우석진, 『기부금 세제개편에 따른 기부참여 변화-기부금 탄력성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 p. 97.

123) 기부금단체가 받는 추가 지급액(기부금의 25%)은 기부자가 세금공제 받아야 할 금액을 단체가 대신 받는 것이므로 조세지출의 일종으로 보임

124) 김진 외, 2018, p. 98.

액인 세액을 납부해야 함

- 예를 들어 한 개인이 500파운드를 자선단체에 기부하였으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0이라면, 그 개인은 500파운드의 그로스-업 금액인 625파운드 의 기본세율(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함¹²⁵⁾

□ Gift Aid의 경우, 해당 연도 외에 전년도에 기부한 것으로 소급공제(carry back)하여 조세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음¹²⁶⁾¹²⁷⁾

- 소급공제는 전년도 세금계산서 제출일(신고일)과 신청하려는 연도의 1월 31일 중 빠른 일자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

□ 자선단체나 CASCs에 적용되는 Gift Aid 혜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CASCs 회원권 요금에 대하여는 Gift Aid를 적용할 수 없음

□ 개인기부가 Gift Aid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¹²⁸⁾

- 영국 납세의무자인 개인에 의해 금전으로 지급되어야 함
- 기부자가 Gift Aid 대상이라고 표명한 것이어야 함
 - 개인이 자선단체 또는 CASCs에 기부할 때 Gift Aid로 적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이나 구두 방식으로 밝혀야 함
- Payroll Giving 방법으로 기부된 것이 아니어야 함
- 해당 기부가 환불 대상이 아니고, 기타 세제 목적상 공제대상이 아니어야 함
- 개인 또는 자선단체와 관련된 자로부터 자산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함
- 부적격 해외 기부가 아니어야 함(2010년 4월 6일 이전 기부에만 적용됨)

125) 영국 정부, "Customer Forums-Self Assessment-Gift Aid donations," <https://community.hmrc.gov.uk/forums/customerforums/sa/27e00349-fc3d-ea11-8454-00155d3bd04f>, 검색일자: 2020. 9. 21.

126) 김진수 외(2009), pp. 74~75.

127)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2019-2020*, 2020, p. 1788.

128) 영국 정부, "Guidance-Chapter 3: Gift Aid,"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ies-detailed-guidance-notes/chapter-3-gift-aid>, 검색일자: 2020. 8. 1.

- 해당 기부와 관련되어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일정 한도 이내여야 하며, 기부금액 구간에 따라 대가의 한도가 다름¹²⁹⁾
 - 기부의 대가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자선단체나 제3자로부터 기부자나 그의 이해관계인이 받은 것을 말함
 - 기부신문이나 소액의 증정품 등 답례품(small token)은 기부 대가로 보지만, 다음 항목들은 대가로 간주하지 않음
 - 단순한 공지, 자선단체의 재산이나 야생서식지 등에 대한 입장권, 자선단체의 재산에 대한 관람 등
 - 이벤트 행사나 저녁식사와 같은 혜택
 - 대가의 한도는 기부금액이 100파운드 이하인 경우 기부금액의 25%, 100파운드 초과 2,500파운드 이하인 경우 25파운드에 100파운드 초과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이고, 하나의 자선단체에서 받은 연간 대가의 합이 2,500파운드를 초과하면 안 됨

〈표 III-5〉 영국 Gift Aid 기부 시 대가의 한도

(단위: 파운드, %)

기부금액	혜택의 한도 ¹⁾
0~100	기부금액의 25%
101~2,500	25파운드 + 100파운드 초과 금액의 5%

주: 1) 해당 한도는 2019년 4월 6일부터 적용되며, 이전 기부에 대하여는 기부금액 100파운드 이하 시 25%, 100파운드 초과 1천파운드 미만 시 25파운드, 1천파운드 초과 시 5%를 한도로 함

자료: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2019-2020*, 2020, p. 1787.

- Gift Aid 기부방법으로는 현금, 수표, 자동이체, 직불카드, 신용카드, 우편환(postal order), 정기구독(standing order) 등이 가능함
 - 외환도 가능하며 자선단체가 Gift Aid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외환이 기부된 날

129) 영국 정부, "Guidance-Gift Aid donation claims for charities and CASCs," 검색일자: 2020. 8. 1. <https://www.gov.uk/guidance/gift-aid-what-donations-charities-and-cascs-can-claim-on#the-benefit-rule>, 검색일자: 2020. 8. 1.

의 환율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음

- 기부는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출 면제 또는 부채·대출 전환에 의한 방식은 인정하지 않음
- 용역, 권리 또는 기타 상품에 대한 대가로 자선단체에 지불하는 것은 기부로 보지 않으며, 그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특정인에 대한 학비 지급
 - 도서나 음식 구입, 바자회 등에서의 구입
 - 바자회나 콘서트 등 행사 입장료
 - 래플(raffle) 또는 복권 구매 등

나) Payroll Giving

- Payroll Giving(급여를 통한 기부)이란 개인의 급여나 연금에서 PAYE(근로소득)를 통해 세전소득에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차감(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함¹³⁰⁾
 - 개인이 속한 기업이나 상사, 가입한 연금이 급여를 통한 기부제도(Payroll Giving Scheme)를 운영하는 경우 이 기부 형식을 적용할 수 있음
 - 기업 등 고용주나 연금은 Payroll Giving Agency(급여 기부 대행사)에 가입함으로써 급여를 통한 기부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 기부는 근로자가 고용주로 하여금 급여에서 기부금을 차감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 고용주가 급여 지급시점에 기부금을 차감하여 대행사로 전하고, 대행사는 지정 자선단체에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자선단체는 Payroll Giving을 통해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 Gift Aid를 주장할 수 없음

130) 영국 정부, "Payroll Giving," <https://www.gov.uk/payroll-giving>, 검색일자: 2020. 6. 28.

- 개인이 받는 소득공제 비율은 개인이 속하는 소득세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짐
 - 예를 들어 기본세율(20%) 납세자가 매달 10파운드를 기부하겠다고 하는 경우 소득세 2파운드를 경감받아 실제 비용으로 8파운드를 납부하게 됨¹³¹⁾
 - 고세율(40%) 납세자의 경우 매달 10파운드를 기부하겠다고 하는 경우 4파운드 만큼 소득세로 비용을 절약하고 실제 비용으로 6파운드를 납부하게 됨
 - 급여 기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매년 5만파운드와 조정 후 총 소득의 25% 중 큰 금액까지로 제한됨¹³²⁾

다) 현물 기부

- 개인이 자선단체에 토지, 부동산, 주식·증권을 기부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를 초과 세함¹³³⁾
 - 자선단체에 토지나 부동산, 주식을 기부한 개인은 해당 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자본이득세를 면제받음
 - 무상증여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및 증권을 자선단체에 저가 양도하는 경우도 기부로 보고 자본이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함
 - 단 지역사회 아마추어 스포츠클럽(CASCs)에 현물 기부한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없음
- 자본이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기부자산 가액은 시가에서 수령 대가를 차감하여 산정함
 - 구체적으로 기부자산의 기부 당일 시가에 판매비용을 더하고 기부자가 받은 대가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기부자산 가액으로 함

131) 김진수 외, 2009, p. 74.

132) 영국 정부, "Guidance-HS342 Charitable giving(20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able-giving-hs342-self-assessment-helpsheet/h342-charitable-giving-2020>, 검색일자: 2020. 7. 8.

133) 영국 정부, "Tax relief when you donate to a charity," <https://www.gov.uk/donating-to-charity/donating-land-property-or-shares>, 검색일자: 2020. 6. 28.

- 판매비용에는 증개 수수료나 인세, 법률 비용 등이 포함됨
-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부일의 양도자산 시가에 판매비용을 더하고 양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액으로 함
-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주식 및 증권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증권
 - 영국의 지정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증권
 - 현재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된 유일한 시장은 런던 증권거래소의 대체투자시장(AIM)과 PLUS시장 공시가격 시장임
 - 공인된 신탁의 단위신탁(units in an Authorised Unit Trust)
 - 공개 투자회사(Open-ended Investment Company, OEIC)의 주식
 - 특정 해외 집단투자(대부분 단위신탁 또는 OEICs에 준하는 계획)에 대한 이자
- 토지를 자선단체에 대여한 경우 기본적으로 대여료는 그 토지에서 발생한 적격 이자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보지만, 무상대여 또는 저가대여인 경우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음

3) 출연재산에 대한 조세지원

- 영국은 생존하는 동안의 증여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사후 증여인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함
 - 영국은 증여세라는 세목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일반증여(사망 전 7년간의 생전 증여 제외)를 증여재산 처분으로 간주하여 증여 시점의 시가에 대해 증여자에게 자본이득세를 과세함¹³⁴⁾
 - 그러나 부동산, 주식 등을 적격 자선단체에 현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가 비과세됨

134) 김학수 외, 2017, p. 115.

- 상속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지지만 적격 자선단체에 상속하는 경우에는 과세 면제되므로 자선단체의 과세문제는 없음¹³⁵⁾

- 영국에서는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유언에 의한 기부)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율의 10%를 감면해 줌
 - 영국은 유산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2012년 “레거시10(legacy10)”을 도입하여 시행함
 - 32만 5천파운드 이상을 상속할 경우 세율은 40%이지만, 정부는 유산의 10% 이상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36%로 낮춰줌
 -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는 해당 재산의 상속자에게 있으며, 자선단체에 유산 기부한 재산은 과세 면제됨

- 기부금 세액감면(tax relief)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개인과 기부를 받는 자선단체 모두에 적용되므로, 자선단체도 대부분의 수입 및 소득에 대하여 자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과세 면제를 받음¹³⁶⁾
 - 대부분의 수익이란 기부금,¹³⁷⁾ 거래 이익, 은행이자와 같이 대여 또는 투자를 통한 수익,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 처분 이익, 매입자산을 포함함
 - 2016년 4월 6일 이전에 영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토지나 부동산의 개발을 통한 이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의무를 짐

135) 원종학·이형민·홍성열,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pp. 78~79.

136) 영국 정부, “Charities and tax,” <https://www.gov.uk/charities-and-tax/tax-reliefs>, 검색일자: 2020. 7. 7.

137) 자선단체가 받는 기부금은 거래이익이 아니며 과세대상 수입은 맞지만 자선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가 면제됨(CTA 2010 section 473(1); ITA 2007 section 522)

다. 기부금 투명성 관리제도

1) 기부금단체의 범위

- 영국에서 세금 감면 대상 혜택이 적용되는 기부금단체는 크게 자선단체와 지역사회에 등록된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Community Amateur sports clubs, CASCs)으로 나눌 수 있음
- 「자선단체법(Charities Act 2011, Charities (Protection and Social Investment) Act 2016 추가)」에 따르면 자선단체란 오직 자선 목적으로만 설립된 단체로, 자선단체 규정 집행에 있어 고등법원의 지배를 받음¹³⁸⁾
 - 자선목적은 「자선단체법」에서 열거하는 특정목적 요건과 공익목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특정목적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다음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지가 유사하거나 목적의 범위에 포함되면 충분함¹³⁹⁾
 - 빈곤의 완화, 군대·경찰·소방 및 구급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 연령, 질병, 재정난·기타 불이익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구제
 - 교육, 종교, 건강 또는 생명구조의 발전
 - 시민권 또는 지역사회 발전
 - 예술, 문화, 유산 또는 과학, 아마추어 스포츠, 인권, 분쟁 해결 또는 화해, 종교 또는 인종 간의 화합이나 평등, 다양성의 증진
 - 환경 보호·개선, 동물 복지
 - 공익목적 요건이란 자선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적이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함
 - 공익목적은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유익해야 하고, 목적에 따라 발

138) Charities Act 2001, section 1.

139) Charities Act 2011 section3(1).

생하는 해가 유익함보다 현저히 적어야 함¹⁴⁰⁾

- 지역사회에 등록된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들에는 자선단체와 유사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Gift Aid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음¹⁴¹⁾
 - CASCs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대신 클럽 회원권, 수입과 관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함

- 자선단체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국의 자선단체 관리주체인 자선단체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 등록하여 심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국세청(HMRC)에 등록해야 함¹⁴²⁾
 - 자선단체위원회 등록을 위해 운영방침문서('governing document' 또는 'rulebook')¹⁴³⁾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연소득 5천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¹⁴⁴⁾¹⁴⁵⁾
 - 자선단체가 기부금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국세청에 등록하려면 위 운영방침문서 외에 다음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함¹⁴⁶⁾
 - 은행계좌 등 금융계좌 정보, 생년월일 및 국가 보험번호를 포함한 관리자 세부정

140) 영국 정부, "Guidance-Public benefit: rules for charities," <https://www.gov.uk/guidance/public-benefit-rules-for-charities>, 검색일자: 2020. 6. 28.

141)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2019-2020*, 2020, p. 1793.

142) 정훈·김도연·박금비·유현영,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53.

143) 운영방침은 단체의 목적, 자금조달 방법, 운영 주체와 운영방법, 회의 개최 및 관리자 임명 방법, 관리자의 비용 관련 규칙, 투자 및 부동산 보유에 관한 규칙, 관리자가 관리 문서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급여에 관한 규칙, 자선단체 해산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이외에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관리자 채용방법 또는 관리자 회의 운영방법, 자선단체의 자산관리 및 장부 유지방법, 내부 논의 해결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144) 김무열, 2019, p. 64.

145) 영국 정부, "Guidance-Charity reporting and accounting: the essentials March 2015," <https://www.gov.uk/guidance/how-to-write-your-charitys-governing-document>, 검색일자: 2020. 7. 27.

146) 영국 정부, "Guidance-Annex iv: trading and business activities-basic principl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y-reporting-and-accounting-the-essentials-march-2015-cc15c/charity-reporting-and-accounting-the-essentials-march-2015>, 검색일자: 2020. 7. 27.

보, 자선단체 등록번호, 자선단체의 목표나 목적, 운영방침문서, Government Gateway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 자선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는 「자선단체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법적 구조, 적용 문서 및 활동에 적용되는 일반법의 제재를 받음

2) 공익목적사용 의무

□ 자선단체들이 자선활동의 필수 부분으로 또는 모금을 위해 하는 거래를 세금 면제 여부 관점에서 크게 자선거래와 비자선거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음¹⁴⁷⁾

- 자선거래는 자선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가정하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비과세 하며, 거래 유형을 고유목적거래와 자선단체 수혜자들 주관 거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고유목적거래는 종교단체가 성경책을 판매하거나 자선교육단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자선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행하는 거래로서, 다음에서 더 상세히 설명할 예정임
 - 자선단체 수혜자들 주관 거래의 예로는, 장애인 구제가 목적인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물품 제조 및 판매가 있음
- 비자선거래는 두 가지 유형의 자선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펜·연필·머그컵 등의 홍보물품 판매와 같이 자선목적으로 적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거래를 의미함
 - 비자선거래의 이익은 소액거래 과세 면제 조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과세를 원칙으로 함

147) 영국 정부, "Guidance-Annex iv: trading and business activities-basic principl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ies-detailed-guidance-notes/annex-iv-trading-and-business-activities-basic-principles#direct-tax-how-a-charity-treats-its-losses>, 검색일자: 2020. 7. 29.

- 고유목적거래의 고유목적은 자선단체의 운영방침문서에 명시되어야 함¹⁴⁸⁾
- 고유목적거래로 얻은 소득이 자선단체의 자선 목적에 의해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고, 고유목적사업 이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됨
 - 고유목적거래의 예로는 다음이 있으며, 각 자선단체들이 그들의 자선 목적을 수행하는 거래임
 - 학교나 대학이 수강료를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입장료를 받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
 - 극장이 공연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
 - 병원이 치료비를 받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거주자 보호시설이 대가를 받고 주거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특정 교육상품을 판매하는 것
 - 고유목적거래 자체뿐 아니라 고유목적을 위해 보조적으로 수행되는 거래도 고유목적거래의 일부로 보고 비과세하며, 다음의 예를 들 수 있음
 - 학교나 대학에서 학생의 편익을 위해 교과서 등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 학교나 대학에서 대가를 받고 학생 자녀를 위한 놀이방을 제공하는 것
 -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전시회 방문객에게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전시회 방문객 아닌 일반 대중에 대한 판매는 비자선 거래로 봄)
 - 극장이 공연 관객들에게 식당 등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것은 비자선 거래로 봄)
 - 장애인 워크숍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비장애인 직원들이 판매하는 것
 - 병원에서 환자나 방문객에게 제과, 세면도구, 꽃을 판매하는 것

148) 영국 정부, "Guidance-Annex iv: trading and business activities-basic principl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ies-detailed-guidance-notes/annex-iv-trading-and-business-activities-basic-principl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ies-detailed-guidance-notes/annex-iv-trading-and-business-activities-basic-principles>, 검색일자: 2020. 8. 5.

- 등록된 자선단체의 관리자(trustee)는 자선단체위원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공익을 위한 목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설명해야 함¹⁴⁹⁾
 - 자선단체의 총수입이 5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보고서가 필요하고, 그 이하의 경우 간단한 요약이 허용됨
 - 보고서에는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이 자선단체위원회가 제공한 공익지침을 적절히 고려하여 권한 및 의무를 행했는지 명시해야 함
 - 자선단체위원회는 연례보고서들의 무작위 샘플을 확인하고 공익에 대한 지속적인 비보고가 있으면 문제로 간주하지만, 공익에 대한 보고가 법적인 규제 사항은 아님

3) 회계 투명성 및 정보공개

- 영국에서는 「자선단체법」에 따라 성립된 자선단체위원회(Charity Commission)가 자선단체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데, 구체적으로 대중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부할 수 있도록 자선단체의 등록과 규제를 담당하고 자선단체 운영의 감독을 수행함¹⁵⁰⁾
 - 자선단체위원회의 책임은 크게 여섯 가지로 명시되어 있음
 - 자선 목적으로만 설립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적격단체 등록을 담당함
 - 어떤 자선단체가 등록대상인지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자선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를 하는 것까지 포함함
 - 자선단체위원회는 자선단체 등록과 관련해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함
 - 자선단체에 과실 또는 위법행위가 있을 때 집행조치를 취함
 - 자선단체가 매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함
 - 등록된 각 자선단체에 대한 적정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함

149) 영국 정부, "Guidance-Public benefit: reporting(PB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ublic-benefit-reporting-pb3/public-benefit-reporting>, 검색일자: 2020. 8. 8.

150) 영국 정부,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harity-commission/about>, 검색일자: 2020. 7. 27.

- 자선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
- 자선단체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

- 자선단체위원회에서는 「자선단체법」에서 규정한 자선활동에 대하여 법률분석을 제공하고 자선단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함¹⁵¹⁾
 - 다만 「자선단체법」은 공익목적 수행의무를 규정할 뿐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음
 - 필요 시 자선단체위원회가 해당 자선단체의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자선단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나, 자선단체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근거하여 시행됨
 - 자선단체위원회의 법률 분석이 법적 효과를 지니지는 않음

- 등록 자선단체는 매년 연례보고서와 부속서류를 자선단체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단체의 유형과 수입금액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정보의 수준이 다름¹⁵²⁾
 - 보고의무의 구체적인 방법은 단체의 유형인 자선회사(charitable company), 법인이 아닌 사단과 법인(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zation, CIO)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자선회사의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다시 정보제공의무를 재분류해 제시함

- 모든 자선단체는 자선단체위원회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장부(accounts)를 작성하고, 등록된 자선단체는 자선단체위원회에 제출할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하여 대중의 요청이 있을 시 모두 제공해야 함¹⁵³⁾
 - 회계장부나 연례보고서 제출 의무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자선법인 조직(charitable

151) 영국 정부, "Analysis of the law relating to public benefit," 2013. 9.,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89796/Public_benefit_analysis_of_the_law.pdf, 검색일자: 2020. 8. 8.

152) 정훈 외, 2019, p. 55.

153) 영국 정부, "Guidance-Charity reporting and accounting: the essentials March 20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y-reporting-and-accounting-the-essentials-march-2015-cc15c/charity-reporting-and-accounting-the-essentials-march-2015>, 검색일자: 2020. 7. 27.

incorporated organisations)¹⁵⁴)과 연 총소득(gross yearly income)이 2만 5천파운드를 초과하는 모든 등록 자선단체들에 요구됨

- 이러한 연례보고서와 회계장부는 온라인으로 신고되어야 함

- 회계장부는 지급기준(영수증 기반 포함) 또는 발생기준 두 가지 형태로 작성할 수 있고,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는 자선단체의 소득과 자선단체의 설립 형태가 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지급기준(영수증 기반 포함)은 가장 간단한 작성방법이며, 비회사 자선단체의 연간 총소득이 25만파운드 이하인 경우 적용할 수 있음

- 지급기준 회계장부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자선단체의 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회계연도 말 자산과 부채 상황을 제공함

- 자선회사들은 「회사법」에 의해 이 방법을 채택할 수 없음

- 비회사 자선단체들 중 한 회계연도의 총소득이 2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단체들 또는 모든 자선회사들은 회계장부를 Statement of Recommended Practice (SORP)에 따라 발생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회계장부는 대차대조표, 재무활동명세서, 주석 등을 포함하며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에서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 연간 총소득 1만파운드를 초과하는 등록 자선단체들과 자선법인(CIO)은 연간 수익 보고서(annual return)를 작성하여 자선단체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자선단체위원회는 이를 통해 개별 자선단체들을 감독할 수 있고 자선 부문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자선법인이 아니면서 연간 총소득 1만파운드 이하인 자선단체들은 보고서 내 관련 항목들만이라도 작성하여 세부사항을 갱신해야 함

154) 자선법인조직(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sation, CIO)이란 「자선단체법((Charities Act 2011)의 Part11에 의해 설립된 조직을 의미하고, 자선회사(Charitable company)란 「회사법(Companies Act 2006)에 의해 Companies House에 등록되고 오직 자선 목적으로만 설립된 회사를 의미함

- 연간 총소득이 2만 5천파운드를 초과하는 자선단체들은 장부를 독립적으로 조사 또는 감사를 받아야 함¹⁵⁵⁾
 - 2만 5천파운드 이하 자선단체들은 운영방침에서 요구할 시에만 외부감사를 받으면 됨
 - 조사 및 감사의 형태는 자선단체의 수입 및 자산에 따라 달라짐
 - 총소득이 2만 5천파운드에서 100만파운드 사이인 경우 독립적인 조사(independent examination)가 요구됨
 - 총소득이 100만파운드를 초과하거나 자선단체의 순자산이 326만파운드를 초과하면서 총소득이 2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가 요구됨

- 자선단체위원회는 각 자선단체에 대한 정보를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음¹⁵⁶⁾¹⁵⁷⁾
 - 2020년 7월 현재 정보를 과거 버전에서 새로운 형식의 베타 버전으로 이전 중임
 - 공개되는 정보는 자선단체의 통계와 각 자선단체의 개별 정보를 나타냄

- 자선단체위원회에서는 공시·감사의무 외 자선단체 투명성 제고의 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자선단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불만의 유형에 따라 건의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둠¹⁵⁸⁾
 - 특히 자선단체의 관리자나 감사인인 경우, 그리고 자선단체의 직원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우려나 의심인 경우 자선단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자선단체 근로자나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선단체위원회에 대한 내부고발도 할 수 있도록 함

155) 영국 정부, "Guidance-Charity reporting and accounting: the essentials March 20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y-reporting-and-accounting-the-essentials-march-2015-cc15c/charity-reporting-and-accounting-the-essentials-march-2015>, 검색일자: 2020. 7. 27.

156) 정훈 외, 2019, pp. 56~57.

157) Charity Commission, "register of charities," <https://apps.charitycommission.gov.uk/ShowCharity/RegisterOfCharities/RegisterHomePage.aspx>, 검색일자: 2020. 7. 30.

158) 영국 정부, "Complain about a charity," <https://www.gov.uk/complain-about-charity>, 검색일자: 2020. 8. 10.

- 자선단체위원회는 민원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조치에는 자선단체의 등록 해지도 포함됨

4. 호주

가. 개인기부금 규모

- 영국자선재단(CAF)에서 제공하는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호주의 기부지수는 상위권에 속하는 편임¹⁵⁹⁾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순위가 항상 7위 이내에 있으며, 2012년에는 1위를 한 바 있음
- CAF의 2019년 호주 개인기부 보고서(*Australia Giving 2019*)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돈을 한 번이라도 기부한 사람이 68%를 차지했고, 4주간 기부금의 증위값은 80호주달러였음¹⁶⁰⁾
 - 대부분의 호주 국민들(남성은 69%, 여성은 76%)은 자선단체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결과를 제시함
 - 기부를 한 이유로 '기부금단체를 신뢰해서'라는 답변이 전체 답변 중 32%로, 14가지 이유 중 5위를 차지함
- 호주 자선단체 및 비영리조직 위원회의 자선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59) 오양래, 2019, <http://www.nanumresearch.or.kr/%EB%82%98%EB%88%94%ED%86%B5%EA%B3%84/%EC%98%81%EA%B5%AD%EC%9E%90%EC%84%A0%EC%9E%AC%EB%8B%A8caf%EC%9D%98-2018-%EC%84%B8%EA%B3%84%EA%B8%B0%EB%B6%80%EC%A7%80%EC%88%98-2/>, 검색일자: 2020. 8. 9.

160) CAF, *Australia Giving 2019*, 2019. 3., https://www.cafonline.org/docs/default-source/about-us-publications/caf-australia-giving-report-2019-16master.pdf?sfvrsn=65e49940_2, 검색일자: 2020. 8. 9.

자선단체들이 총 100억달러의 기부와 유증을 받았으며, 이는 기부와 유증이 자선 단체의 총수익 1,500억달러 중 약 6.6%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음¹⁶¹⁾

- 기부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인 납세자가 기부금 공제를 신청한 금액과 건수는 각각 2016~2017년 기준 총 34억 8천만달러, 452만명임
 - 10년 전과 비교하면 기부자 수는 감소했지만 기부금은 증가했음

나.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1) 기부금의 정의 및 종류

- 호주 세법상 기부금(donation)이란, 기부자가 어떠한 물질적 혜택이나 이익을 받지 않고 현금 또는 자산을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¹⁶²⁾
- 호주에서는 기부를 크게 증여(gift)형 기부와 기여(contribution)형 기부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세금 감면도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함¹⁶³⁾
 - 증여형 기부란 기부자가 어떠한 물질적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금전 또는 자산을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일반적 증여의 한 유형에 속함
 - 증여형 기부는 보편적인 대부분의 기부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호주 국세청은 그중 특별히 문화재, 국가유산의 기부 또는 사업자의 재고자산 기부를 별도로 설명함
 - 기부자가 기부금단체로부터 금전적 가치를 지닌 물질적 대가를 받으면 해당 기부는 기여형 기부로 분류

161) Philanthropy Australia, "Giving in Australia: the fast facts," <https://www.philanthropy.org.au/tools-resources/fast-facts-and-stats/>, 검색일자: 2020. 8. 9.

162) 호주 국세청, "Gifts and donations," <https://www.ato.gov.au/uploadedFiles/Content/IND/Downloads/gifts-and-donations.pdf>, 검색일자: 2020. 7. 24.

163) 호주 국세청, "Is it a gift or contribution?,"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claiming-tax-deductions/is-it-a-gift-or-contribution-/>, 검색일자: 2020. 6. 20.

- 정치자금 기부금도 기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분류 기준이 다르고 증여형 기부와 기여형 기부가 모두 가능한 별도 형태의 기부방식임

2) 기부금 공제 방법 및 한도

- 호주의 개인기부는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하고, 기부자가 기부의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크게 증여형 기부와 기여형 기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대가를 받지 않는 증여형 기부에는 기부 자산에 따라 문화재 기부, 국가(자연)유산 기부, 사업자의 재고자산 기부 등 특수 유형의 기부가 포함되고 각 기부별로 기부자산 가치 산정 방법이 다름
 - 그러나 기부자 개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액에는 한도가 없으며 다만 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총수익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최대 5년 동안 분할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여형 기부는 기부자가 기부에 대해 대가(Minor benefit)를 받으므로 소득공제 청구는 기부가액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만큼 할 수 있고 한도는 없음
 - 다만 기여형 기부에서는 분할공제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표 III-6〉 호주의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기부금 유형		조세지원 내용
증여형 기부 ¹⁾	일반 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액을 한도 없이 소득공제 가능함 - 자산(주식 제외) 기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월 이내 구입 자산은 Min(기부 당일 시장가치, 취득원가)만큼 공제하며 공제금액에 한도는 없음²⁾ • 12개월 이전 구입 자산은 국세청에 의해 5천달러 초과로 평가받는 경우에만 평가금액만큼 공제함 - 주식 기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월 이전 취득한 2달러 이상 5천달러 이하 주식만 기부일 시장가치만큼 공제함

〈표 III-6〉의 계속

기부금 유형		조세지원 내용
증여형 기부 ¹⁾	문화재 기부	- 기부가액을 한도 없이 소득공제 가능함
	국가(자연)유산 기부	• 기부자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예술부 장관 지정 2명 이상 평가자의 서면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으로 함
	재고자산 기부	- 기부가액을 한도 없이 소득공제 가능함 - 기부 재고자산의 가치는 기부 당일 재고자산의 시장가치
기여형 기부		- 기부가액을 한도 없이 소득공제 가능함 • 기부가액에서 기부자가 받은 대가(Minor benefit)를 차감한 금액 ²⁾ 만큼 공제함
정치자금 기부		- 최대 1,500호주달러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 기부가액은 Min(취득가액, 기부 당일 자산시가)으로 함

주: 1) 증여형 기부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하지만 공제받는 연도 총수익을 한도로 하므로, 기부한 과세연도 포함 최대 5년까지 분할 공제받을 것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음
2) 공제 가능 기부금액의 상한은 없으나, 최소 2달러 이상이어야 함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가) 일반 증여형 기부

- 기부자는 공제 대상 기부금단체(deductible gift recipients, DGR)에 기부한 것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공제 대상 기부금단체는 비영리단체 중 호주의 자선단체와 비영리조직위원회(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에 등록하여 해당 자격을 얻은 단체를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4장 호주의 '다. 1) 기부금단체의 범위'에서 논함
- 증여형 기부 시 기부자는 기부에 대한 대가나 물질적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함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사적 혜택을 받고 기부를 제공한 경우, 증여형 기부로 보지 않음¹⁶⁴⁾

164) 호주 국세청, "Gifts and donations,"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deductions-you-can-claim/other-deductions/gifts-and-donations/#Howmuchtoclaim>, 검색일자: 2020. 8. 5.

- 래플(raffle)이나 예술 연합 티켓
 - 초콜릿, 머그잔, 열쇠고리, 모자, 장난감 같은 광고가격이 포함된 물건들
 - 모금을 위한 저녁식사나 콘서트 등 참석 비용(해당 비용이 저녁식사 가치를 초과해도 기부로 보지 않음)
 - 회원권 요금(회원 가입비)
 - 학교 교육비 감면 등 대가를 받고 학교 건축 펀드에 한 기부
 - 기부자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부(기부자가 사전에 알고 기부한 경우)
 -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유 없이 한 기부
 - 급여희생약정에 의하여 행해진 기부
 - 유언에 의한 기부
- 다만 기부자가 대가로 받았더라도 다음의 예처럼 가치가 상당하지 않다면 해당 기부를 증여형 기부로 봄¹⁶⁵⁾
- 스티커 또는 옷깃 배지
 - 뉴스레터나 정기간행물에서의 언급
 - 상패(plaque, 비용이 적게 들고 눈에 띄는 경우에 한함)
- 증여형 기부 시 기부자산의 형태는 현금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이 될 수 있고, 기부자산 가액은 2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함¹⁶⁶⁾
- 기부 건당 2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금액의 합이 2호주달러 이상이면 됨¹⁶⁷⁾
- 기부되는 금전이나 자산에는 공공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에 이전하는 문화재

165) 호주 국세청, "Gift types and conditions-Conditions,"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Receiving-tax-deductible-gifts/Gift-types-and-conditions/#Conditions>, 검색일자: 2020. 7.17.

166) 호주 국세청, "Gift types and conditions-Tax deductible gift types,"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receiving-tax-deductible-gifts/gift-types-and-conditions/#Taxdeductiblegifttypes>, 검색일자: 2020. 9. 22.

167) 호주 국세청, "Gifts of \$2 or more,"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Claiming-tax-deductions/Gift-types,-requirements-and-valuation-rules/Gifts-of-\\$2-or-more/](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Claiming-tax-deductions/Gift-types,-requirements-and-valuation-rules/Gifts-of-$2-or-more/), 검색일자: 2020. 8. 5.

나 국가신탁 등에 기부하는 국가유산 등도 포함됨

○ 용역의 제공은 기부로 보지 않음¹⁶⁸⁾

□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그 자산은 기부 시점으로부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며, 기부하는 개인이 구매한 것이어야 함¹⁶⁹⁾

○ 자산은 토지나 물건 등과 같은 물리적인 실체뿐 아니라 가치를 지닌 권리(예를 들어 소유권) 등도 포함함

○ 보유기간 요건이란 자산을 기부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전 기간 내에 구매했어야 함을 의미함

-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 시 기부자산의 가치는 기부 당일 시장가치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부자 개인이 1,800호주달러에 컴퓨터를 구입하여 10개월 후 기부금단체에 기부했는데, 기부일 당시 컴퓨터의 시장가치가 1,200호주달러라면 해당 개인은 1,200호주달러만큼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 즉 12개월 이전에 구매한 자산의 기부에 대해서는 자산이 국세청에 의해 5천호주달러 초과 금액으로 평가될 때에만 그 평가금액만큼 기부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기부자는 호주 국세청에 평가 신청서와 기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자산 가치 평가를 신청해야 함¹⁷⁰⁾

• 예를 들어 기부자 개인이 5만호주달러에 1980년에 구입했던 토지의 한 구역을 2014년에 국세청에 가치 평가를 신청하여 15만호주달러만큼 가치를 산정

168)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de 66th edition 2020*, 2020, p. 1061.

169) 호주 국세청, "Property purchased during the 12 months before making the gift,"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claiming-tax-deductions/gift-types,-requirements-and-valuation-rules/property-purchased-during-the-12-months-before-making-the-gift/>, 검색일자: 2020. 8. 5.

170) 호주 국세청, "How donors get valuations,"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claiming-tax-deductions/how-donors-get-valuations/>, 검색일자: 2020. 8. 5.

받았다면, 15만호주달러만큼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개인이 구매한 자산이 아닌 추천을 통해 얻은 경품, 상속·증여받은 자산 등을 기부하는 것은 증여형 기부로 보지 않음
-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기부금액은 기부일 주식의 시장가치¹⁷¹⁾
 - 기부 시점 이전 최소 12개월 이전에 취득한 2호주달러 이상 5천호주달러 이하의 주식이어야 함¹⁷²⁾
 - 두 종류 이상의 주식을 하나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모든 주식의 시장가치를 합산하여 금액 요건(5천호주달러 이하) 충족 여부를 보지 않고, 각 주식을 별도의 기부로 보아 각각 금액 요건을 적용함
 - 예를 들어 기부자 개인이 상장기업 A 주식 3천호주달러어치와 상장기업 B 주식 4천호주달러어치를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두 주식 모두 12개월 이전에 구입함), 두 주식의 가치를 합산하면 5천호주달러를 초과하지만 각각은 5천호주달러 이하이므로 개인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취득 시점부터 보유 시점까지 보유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주식 또는 5천호주달러 초과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각 경우별로 판단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예를 들어 한 개인이 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12개월 이상 보유하던 중 기업의 증자 등으로 480호주달러어치의 새로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그 시점에서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기존 주식과 새로운 주식을 동시에 기부금단체에 기부한다면, 보유기간 요건을 만족한 기존 주식은 기부일의 시장가치를 그대로 공제 청구할 수 있지만, 보유기간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새로운 주식

171) 호주 국세청, "Trading stock,"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claiming-tax-deductions/gift-types,-requirements-and-valuation-rules/Trading-stock/>, 검색일자: 2020. 8. 5.

172) 호주 국세청, "Shares valued at \$5,000 or less,"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claiming-tax-deductions/gift-types,-requirements-and-valuation-rules/shares-valued-at-\\$5,000-or-less/](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claiming-tax-deductions/gift-types,-requirements-and-valuation-rules/shares-valued-at-$5,000-or-less/), 검색일자: 2020. 8. 7.

은 시장가치가 500호주달러로 평가되더라도 최대 480호주달러까지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총수익 한도)

- 상장기업의 주식(a listed public company)임
- 기부 시점에 호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주식이어야 함(거래 정지되거나 증권거래소 목록에서 제외되면 안 됨)
- 주식은 개인이 구입한 것뿐 아니라 상속·증여받은 것, 보너스나 상금 등으로 받은 것도 기부 가능함

□ 기부자는 기부한 것과 관련해 다음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¹⁷³⁾

- 기부하는 경우 공제 가능 기부금단체에서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영수증
-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영수증 미발행 시 은행예금 명세서 등 다른 기록

□ 증여형 기부를 한 기부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¹⁷⁴⁾

-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기부자는 개인, 기업, 신탁 등 유형에 제한이 없음

□ 기부자는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부한 과세연도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부금 분할 소득공제(Election to spread gift deduction)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향후 4년(기부 연도를 포함하여 총 5년)까지 나누어 공제를 받을 수 있음¹⁷⁵⁾

- 분할 소득공제 규정은 환경단체에 대한 기부, 문화재 기부, 국가유산 기부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 신고서 제출 전 분할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각 연도에 공제받고자 하는 기부금의 비율을 정해야 하며, 그 비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173) 호주 국세청, "Keeping a record of your donation,"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claiming-tax-deductions/keeping-a-record-of-your-donation/>, 검색일자: 2020. 9. 22.

174) Etax, "How to claim tax deductible donations," <https://www.etax.com.au/claim-tax-deductible-donations/>, 검색일자: 2020. 7. 22.

175) 호주 국세청, "Election to spread gift deduction," <https://www.ato.gov.au/Forms/Election-to-spread-gift-deduction/>, 검색일자: 2020. 8. 5.

- 예를 들어 개인 기부자가 2014~2015 회계연도에 기부금단체에 차량을 기부하고 국세청 심사위원(Commissioner of Taxation)이 차량의 가치를 3만호주달러로 책정하였을 때, 기부자는 해당 금액을 다음처럼 향후 5년간 나누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2015년 10%, 2016년 30%, 2017년 20%, 2018년 20%, 2019년 20%
 - 분할공제는 2014~2015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 전에만 신청 가능함
 - 연간 공제 비율을 미리 정하고 신청했어도 공제를 받는 도중 남은 공제 비율을 변경하여 신청 가능함
 - 해당 사례에서 2017년에 미리 신청하고 남은 공제 비율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2018년과 2019년의 공제 비율을 변경 신청할 수 있음

나) 문화재의 증여형 기부

- 개인은 문화재 기부 프로그램(Cultural Gifts Program)을 통해 공공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에 문화재 등을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¹⁷⁶⁾
 - 문화재 기부 프로그램은 민간인이 호주의 공공 미술관, 도서관 및 박물관 등에 기부하는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줌
 - 문화재 기부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 신탁 등 다른 유형의 납세자들도 할 수 있음
 - 기부 가능한 문화재의 유형으로는 토착 예술, 문화 예술품, 자연과학자료, 영화 및 사회사 작품, 회화, 원고, 서적, 골동품, 장신구 등이 있음
- 문화재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단체는 호주 국가펀드, 국내 공공 도서관, 국내 공공 박물관, 국내 공공 미술관,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중 두 곳으로 구성된 호주의 기관, 호주의 아트뱅크(the Australian Government for Artbank)임

176) 호주 국세청, "Cultural Gifts Program,"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undraising/Claiming-tax-deductions/Gift-types,-requirements-and-valuation-rules/Cultural-gifts-program/>, 검색일자: 2020. 8. 7.

- 호주 국가펀드, 아트뱅크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제 가능 기부금단체여야 함
-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기부자산이 평가를 통해 산정받은 가치임
 - 일반적으로 예술부(Arts Secretary) 장관이 지정한 평가자들의 2개 이상의 서면 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함
 - 그러나 기부 목적으로 취득 또는 기부를 받겠다는 합의에 따라 취득한 경우나 기부하기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상속 제외)에는 기부자의 기부자산 취득가액 또는 서면평가 금액 평균 중 작은 금액으로 함
- 기부금단체가 실제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온전히 이전받지 않고 자산을 받는 경우, 개인기부자가 받는 소득공제 혜택은 감소함
 - 즉각적인 보호권과 통제권
 - 영구적 유치권과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
 -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이고 공평한 소유권

다) 국가유산의 증여형 기부

- 개인은 국가 신탁(National Trust)에 다음과 같은 국가유산(heritage)을 기부하고, 국가 신탁은 공익을 위해 해당 유산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그 기부를 수락할 수 있음¹⁷⁷⁾
 - 국가의 경관, 고유하거나 역사적 유산 가치를 지닌 장소
 - 호주 정부가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중요한 자연, 고유하거나 역사적 유산 가치를 지닌 장소
 - 호주 전역에 걸쳐 중요한 자연, 고유하거나 역사적인 유산가치 지닌 장소

177) 호주 국세청, "Heritage gifts-Partial donations,"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claiming-tax-deductions/gift-types,-requirements-and-valuation-rules/Heritage-gifts/#Partialdonations>, 검색일자: 2020. 7. 24.

- 국가유산 기부의 경우 공제 가능한 기부금단체는 호주 국가 신탁 중 9가지 지역 별 신탁으로 한정되며, 각 단체는 해당 유산을 공익을 위해 보존하는 목적으로 수령해야 함

- 국가유산 기부에 대해서는 자산의 완전한 이전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데, 이를 부분기부(partial donation)라 함
 - 자산 기부는 기부금단체에 대한 자산의 이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자산의 소유권이 기부자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완전히 양도되어야 이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자산 기부의 조건을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산에 대하여 즉각적인 유치·통제 또는 완전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부자는 해당 기부에 대한 세금 감면을 덜 받는 방식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 소득공제 감소액은 기부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유지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나 혜택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함
 - 부분기부의 예로 다음을 들 수 있음
 - 윈스턴은 시드니에서 상당한 유산적 가치를 지닌 집을 소유하며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집을 호주 국가 신탁에 기부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유산 기부의 예외규정으로 윈스턴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거주 혜택만큼 소득공제액은 감소함

- 국가유산 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예술부에 의해 승인된 평가자들의 2개 이상의 서면 평가서의 평균값으로 함
 - 다만 자산이 처음부터 기부 목적으로 취득되었거나 기부금단체가 기부받겠다는 합의에 따라 취득된 경우 또는 기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상속 제외)한 경우에는 다음 중 적은 값을 공제액(기부자산의 가치)으로 평가함
 - 기부자의 자산 취득가액
 - 서면 평가의 평균
 - 또한 기부자산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해당 자산을 기부가 아닌

판매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평가서가 필요하지 않음

라) 재고자산의 증여형 기부

-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은 사업 관련 재고자산을 기부할 수 있음¹⁷⁸⁾
 - 사업 관련 재고자산이란 사업자 개인이 생산·제조·인수하여 제조·판매·교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가축도 포함됨
 - 재고자산 기부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사업자 개인이 정상적인 사업 과정 밖에서 기부해야 함
 - 가축 기부 시, 가축의 강제 처분 또는 사망은 허용하지 않음

- 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 재고자산의 가치는 기부 당일 재고자산의 시장가치임

마) 기여형 기부

- 기여형 기부는 기부자가 기부에 대한 대가로 물질적 혜택을 받는 형태의 기부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개인 기부자의 기부금 소득공제가 허용됨¹⁷⁹⁾¹⁸⁰⁾
 - 기부 주체가 개인이어야 하고,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DGR)에 전달되는 기부임
 - 적격 모금행사와 같이 승인된 행사에 대한 기부임¹⁸¹⁾

178) 호주 국세청, "Trading stock,"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claiming-tax-deductions/gift-types,-requirements-and-valuation-rules/Trading-stock/>, 검색일자: 2020. 8. 10.

179) 호주 국세청, "Is it a gift or contribution?-Contributions,"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Claiming-tax-deductions/Is-it-a-gift-or-contribution-/#Contributions>, 검색일자: 2020. 9. 22.

180) 호주 국세청, "Further conditions for a tax-deductible contribution,"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fundraising-events/further-conditions-for-a-tax-deductible-contribution/>, 검색일자: 2020. 9. 22.

- 기부금액이 150호주달러를 초과함
 - 기부자가 받은 대가는 150호주달러 이하, 기부금액의 20%임
 -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자산 기부의 경우 보유기간을 충족(기부시점 이전 12개월 내에 구입)한 자산이어야 하고 보유기간 요건을 미충족할 시 국세청 심사위원이 5천호주달러 이상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자산이어야 함
 - 주식 기부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기부 시점 기준 최소 12개월 이전에 취득함
 - 150호주달러 초과 5천호주달러 미만의 가치임
 - 등록된 공공 기업의 주식임(in a listed public company)
 - 호주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음(listed for quotation on the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 기부자가 받은 혜택이 150호주달러 이하이면서 기부금액의 20% 이하여야 함
- 모금행사(fundraising events)는 비영리단체(Not-For-profit, NFP)가 기금을 조성하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기부자가 구매하는 티켓 가격만큼 단체에 기부되는 원리임
- 모금행사의 예로는 축제, 갈라쇼, 저녁식사, 공연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를 들 수 있고 해당 행사에 참석·참여할 수 있는 티켓 구매비용 또는 재산의 기부 또는 자선경매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공제 청구 대상이 됨
 - 호주 국세청은 모금행사(fundraising events) 참석용 티켓 구매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음
 - 기부자는 행사에 참석하여 저녁식사 등의 혜택을 받으므로 티켓 구매를 통한 기부가 무상증여의 형태인 증여형 기부에 속하지 않고 기여형 기부로 봄
 - 해당 기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떠한 혜택도 보상받지 않으면 증여형 기부로

181) 기금 조성 행사는 비영리단체자금을 모으는 일반적인 방법임(자료: 호주 국세청, "Fundraising events,"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fundraising-events/>, 검색 일자: 2020. 6. 30.)

분류될 수 있음

-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적격 모금행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모금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되어야 함
 - 모금 진행 단체가 공제 가능 기부금단체여야 함
 - 기부자들에게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을 알려야 함 (즉 기부대가(minor benefit)를 알려야 함)
 -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주·연방·지방정부의 자금 모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한 회계연도 안에 같은 유형의 행사를 15회 미만 개최했어야 함
 - 적격 행사의 예로는 축제, 갈라쇼, 저녁식사, 공연 등이 있음. 상품 판매가 포함된 행사에서 해당 상품 판매는 공급업자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음
 - 정당에서 개최하는 모금행사는 적격 모금행사로 보지 않음
 - 정치자금 기부금은 증여형 기부, 기여형 기부 상관없이 별도 규정을 적용함

- 기부자가 받은 대가(Minor benefit)는 기부자들이 기부금단체(DGR)에 한 기여형 기부에 대하여 단체로부터 받는 혜택(이익)을 의미함¹⁸²⁾
 - 예를 들어 기부자가 자선단체 저녁식사에 참여하면서 200호주달러를 기부했는데, 제공받은 저녁식사의 가치가 30호주달러라면 대가의 가치는 30호주달러임

- 대가(Minor benefit)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가격·시장 비교법’ 또는 ‘비용 기준 산정법’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대가를 표준 재화·서비스·행사로써 공개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가격·시장 비교법을 사용할 수 있음
 - 공개시장에서 부과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함

182) 호주 국세청, “Minor benefits,”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valuing-contributions-and-minor-benefits/minor-benefits/>, 검색일자: 2020. 6. 20.

- 재화·서비스·행사가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유사하거나 비교 가능한 재화·용역·행사에 대해 시장(commercial) 부문에서 부과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비용 기준 산정법은 가격 또는 시장 비교를 사용하여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함
 - 실제 비용, 개념적 비용 및 편익 제공과 관련된 수익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임
- 기부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부금액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됨
- 예를 들어 기부자 개인이 자선행사용 저녁식사에 참석하기 위해 420호주달러를 지불하고 제공받은 저녁식사의 가치가 80호주달러라면, 청구 가능한 공제 금액은 $340(=420-80)$ 호주달러임
 - 이 경우 기부자가 기부의 반대급부로 받은 대가(저녁식사)가 150호주달러 이하이면서 기부금액 420호주달러의 20%(84호주달러) 이하이므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만약 이 예에서 저녁식사의 가치가 100호주달러라면 기부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므로,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바) 정치자금 기부금

-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증여형 기부 또는 기여형 기부를 하는 개인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¹⁸³⁾
- 기부금 수령자가 다음 중 하나여야 함
 - 연방·주 또는 영토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당

183) 호주 국세청, "Claiming political contributions and gifts," <https://www.ato.gov.au/non-profit/gifts-and-fundraising/in-detail/fundraising/claiming-political-contributions-and-gifts/>, 검색일자:2020. 8. 1.

- 연방의회와 독립 회원, 주의회, 북부 입법부 또는 호주 수도 내 입법부
 - 연방의회, 주의회, 북부 입법부 또는 호주 수도 내 입법부의 독립 후보
 - 기부는 금전 또는 기부 이전 12개월 이내에 구매한 자산 중 하나여야 하며, 기부금액은 2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함
 - 유언에 의한 기부는 공제 대상이 아님
- 등록된 정당에 회원 가입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청구가 가능함
- 선거의 독립 후보자 또는 독립 정치인에게 증여형 기부 또는 기여형 기부를 하는 경우, 각각 다음의 기간을 준수해야 함
- 독립 후보자에게 기부 시 선거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공표된 이후 다음 중 하나의 사건 전에 기부하여야 함
 - 후보 철회
 - 선거 결과가 공식적으로 선언 또는 발표됨
 - 독립 정치인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 중에 해야 함
-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형·기여형 기부를 한 과세연도에 공제를 청구해야 하며, 한 과세연도당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은 1,500호주달러임(정당 기부와 독립 후보자·정치인 기부를 불문함)
- 기부에 대한 서면 문서를 보유해야 함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기부일 현재 자산의 시장가치 또는 개인의 자산 취득가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함

3) 출연재산에 대한 조세지원

- 호주에는 상속세 제도가 없어 사후 증여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생전 증여에 대한

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다만 자산 양도 시 얻은 차익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함

- 자본이득 과세는 자본이득세라는 세목을 별도로 두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득을 개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일반 소득세로 한꺼번에 과세함

□ 상속세 제도가 없다 보니 호주에서도 유산기부가 활성화되어 있음

- 다만 유산기부란 피상속인이 직접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는 유산기부로 보지 않음

□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중 공제 가능 기부금단체에는 출연재산과 운용소득, 매각 대금 등의 수익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법인세를 면제해 줌

다. 기부금 투명성 관리제도

1) 기부금단체의 범위

가)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Not-for-profit, NFP)란 직간접적으로 개인 회원들의 수익 또는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그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임¹⁸⁴⁾

- 비영리단체는 자선단체와 자선단체가 아닌 나머지 단체, 두 가지 범주로 구분 가능함
- 권한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선단체 포함 비영리단체들은 소득세 면제나 부가가치세(GST) 할인 등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제 가능 기부금단체

184) 호주 국세청, “Starting an NFP,” <https://www.ato.gov.au/Non-profit/Getting-started/Starting-an-NFP/>, 검색일자: 2020. 9. 22.

(Deductible Gift Recipient, DGR)'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음

- 자선단체는 공익을 위한 자선목적만을 가진 단체로, 2012년 12월 3일부터 호주의 자선 단체와 비영리조직위원회(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이하 'ACNC'라 함)에서 등록과 관리를 담당함¹⁸⁵⁾
 - 자선단체의 설립목적은 오직 자선목적만 허용되며, 자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 또는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수반되는 것은 인정함
 - 자선단체의 예로는 종교집단, 비영리 노인보호시설, 노숙자 쉼터, 장애인 서비스 기관, 대학, 동물복지기관, 예술·문화집단 등이 있음
 - 자선단체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또는 공제 가능 기부금단체의 지위를 얻기 위해 ACNC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자선단체의 세제 혜택 적용 여부 결정 및 기부금단체 최종 승인은 국세청(ATO)에서 함¹⁸⁶⁾
 - 자선단체는 세제 혜택 적용 가능성에 대해 자체 평가로 결정할 수 없음

- 자선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들은 대부분의 체육·레크리에이션 클럽,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전문직·사업 연합과 사회적 조직들을 포함함
 - 자선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들도 공제 가능 기부금단체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ACNC 등록 후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반면 법인세나 기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소득세 면제 기관 목록의 유형 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할 수 있고, 불명확한 경우 국세청(ATO)에 신청할 수 있음¹⁸⁷⁾
 - 소득세 면제 자체 평가가 가능한 조직: 지역사회 봉사단체, 문화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고용조직, 자원개발 조직, 과학 조직, 스포츠단체 등

185) 호주 국세청, "What type of NFP is your organisation?," <https://www.ato.gov.au/non-profit/getting-started/what-type-of-nfp-is-your-organisation-/>, 검색일자: 2020. 9. 22.

186)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de 66th edition*, 2020, p. 435.

187) 호주 국세청, "Types of income tax exempt organisations," <https://www.ato.gov.au/Non-profit/your-organisation/do-you-have-to-pay-income-tax-/types-of-income-tax-exempt-organisations/>, 검색일자: 2020. 7. 25.

- 국세청(ATO) 사이트에 각 조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포함됨

나) 공제 대상 기부금단체

- 공제 대상 기부금단체(deductible gift recipient, 이하 ‘기부금단체’라 함)란 기부자로 하여금 세금 혜택을 받게끔 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를 의미함
- 자선단체가 모두 기부금단체는 아니며 어떤 단체가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호주 사업등록 웹사이트(abn.business.gov.au/DgrListing.aspx) 및 ACNC 웹사이트¹⁸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017년 12월 5일, 호주 정부는 기부금단체 조직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 및 간소화하기 위해 다음 주요 내용의 개혁을 공표하였으나, 2020년 7월 현재 의회에 입법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계획이 COVID-19로 인해 중단 및 지연되고 있음¹⁸⁹⁾¹⁹⁰⁾
 - 기부금단체 승인을 원하는 비정부기구는 ACNC에 자선단체 등록을 요구함
 - 기부금단체에 요구되던 공공자금 규정을 제거함
 - 4개의 기부금단체 등록 관리부서를 호주 국세청(ATO)과 ACNC로 이관함
- 기부금단체 승인이 된 조직의 유형과 예는 다음과 같음¹⁹¹⁾
 - 조직의 유형은 크게 호주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특정 기금·단체 또는 자선단체,

188) ACNC 웹사이트 내 자선단체 등록부 정보는 다음 링크에 있음. <https://www.acnc.gov.au/charity/about-charity-register/download-charity-register-data>, 검색일자: 2020. 7. 28.

189) 호주 국세청, “Deductible gift recipient reform,”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In-detail/Other-topics/Not-for-profit/Deductible-gift-recipient-reform/>, 검색일자: 2020. 7. 28.

190) 호주 국세청, “DGR reforms delayed,” <https://www.ato.gov.au/Non-profit/Newsroom/Fund-raising/DGR-reforms-delayed/>, 검색일자: 2020. 7. 28.

191) 호주 국세청, “D9 Gifts or donations 2020,”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return/2020/Tax-return/Deduction-questions-D1-D10/D9-Gifts-or-donations-2020/>, 검색일자: 2020. 7. 21.

해외 원조기금, 학교 건물 건축기금, 일부 환경·문화단체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기부금단체의 구체적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¹⁹²⁾

- 공립병원 또는 비영리병원, 공공 자선기관(Public benevolent institutions, PBI)
- 위 병원과 자선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1963년 10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공공기금
- 공립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공인된 과학 연구기관
- 자발적 결혼 가이드 기구(voluntary marriage guidance organisations)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금
- 환경단체 등록부에 등록된 환경단체, 문화단체 등록부에 등록된 문화단체
- 인류나 동·식물의 질병에 관한 원인·예방법·치료법을 연구하는 기관, 인간 질병의 예방과 통제를 촉진하기 위해 주로 활동하는 자선기관
- 영연방이나 연합군의 편의·오락·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금 및 기관
- 정부·준정부 또는 민간이 세우는 비영리학교나 비영리대학교의 건축을 위한 자원조달 기금, 공립대학 또는 공립대학 설립을 위한 공공기금
- 교육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술·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과 부설 주거 교육기관, 연방 설립 대학 소속 거주용 교육기관,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 지방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호스텔 등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금
- 특정 해외 원조기금, 기부금단체로 등록된 교회

2) 공익목적사용 의무

□ 자선기관, 기금, 단체 운영에 있어 기부금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고유목적인 공익목적에 맞는 기부금 기금(gift fund)을 보유해야 함¹⁹³⁾

○ 기부금 기금이란 자선기관, 기금, 단체 등의 일부인 기금 형태로서, 다음 특성을

192) CCH, *Australila Tax guide*, pp. 1056~1059.

193) 호주 국세청, "Endorsement for the operation of a fund, authority or institution," <https://www.ato.gov.au/Non-profit/Getting-started/In-detail/Types-of-DGRs/Rules-and-tests-for-DGR-endorsement/?page=3>, 검색일자: 2020. 8. 9.

- 가지고 그 상위기관들의 고유목적을 위해서만 유지 및 사용되어야 함
- 고유목적에 위한 현금이나 자산의 증여 및 공제 가능 기부금(모금행사를 통해 받은 기부금 포함)과 기부받은 자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소득으로 조성되고, 그 외의 현금과 자산은 받지 않음
 - 기금과 그 상위기관이 기부금단체 승인 취소를 받은 경우, 해당 기금의 잉여자산을 다른 공제 가능 기부금단체로 이전해야 함
- 기부금 기금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기록을 보유해야 함
- 계좌와 현금 관리 시스템, 재산 등록부 등을 통해 지급받은 모든 증여·기부
 - 상위기관인 기부금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지출 등 기금에서의 자산 이전 사항
 - 이전된 현금이나 자산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
- 기부금 기금의 현금과 자산은 조직의 나머지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함
- 기부금 기금의 자금은 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에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음¹⁹⁴⁾
- 기부금단체의 사용을 위한 현금과 자산의 이전
 - 기부금단체나 기금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자산이나 서비스의 구매
 - 은행이자, 회계·감사 비용, 필기류 구매비용 등 기부금 기금을 운영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
 - 예를 들어 문화단체의 기부금 기금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허용되는 사항으로 봄
 - 모금 시 소요되는 전문가 수수료
 - 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에 맞는 투자비용
- 기부금 기금이 목적에 맞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그 기금을 보유한 기부금단체는 공제 가능 기부금단체로서의 자격을 박탈 당함

194) Ibid.

- 단 기금을 목적에 맞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 행정상 실수이면 기부금단체 승인을 바로 철회하지 않고 기금의 계정에 오류를 기록하면 됨
- ACNC는 「ACNC법(ACNC Act)」에 따라 자선단체의 등록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며, 특히 자선단체가 고유목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감독함¹⁹⁵⁾
 - 고유목적, 즉 자선목적은 자선단체의 등록 조건이므로 등록 상태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꾸준히 점검하는 것임
 - ACNC는 단체로부터 정기적인 보고를 받거나 그 외 정보를 수집하여 자선단체를 규제하고 법 준수를 돕기 위한 지침이나 교육을 제공하기도 함
 - ACNC는 또한 자선단체 규제에 있어 다양한 처벌 권한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공식권한을 사용하는 경우 자선등록부에 게시해야 함¹⁹⁶⁾
 - 다양한 처벌 권한이란 자선단체에 지시나 경고를 내리는 것, 강제 집행을 하는 것, 자선단체 등록을 취소하는 것 등을 의미하며, 그중 세제 관련 제재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회계 투명성 및 정보공개

- 등록 기부금단체는 모두 각 회계기간마다 ACNC에 연차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형·대형 기부금단체는 연차 재무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¹⁹⁷⁾
 - ACNC에 대한 기부금단체의 재무보고 의무는 연간 총수입¹⁹⁸⁾을 기준으로 나눈

195) ACNC, "Regulating charities," <https://www.acnc.gov.au/raise-concern/regulating-charities>, 검색일자:2020. 8. 10.

196) ACNC, "ACNC CHARITY COMPLIANCE DECISIONS," <https://www.acnc.gov.au/raise-concern/regulating-charities/action-taken-against-charities>, 검색일자: 2020. 8. 10.

197) ACNC, "Reporting annually to the ACNC," <https://www.acnc.gov.au/for-charities/manage-your-charity/obligations-acnc/reporting-annually-acnc>, 검색일자: 2020. 8. 9.

198) 기부금단체의 연간 총수입은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자본 및 자산 허용 또는 자선단체의 일반적인 활동 중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하며, 수입의 예로 다음을 들 수 있음

- 정부·재단·개인 또는 기타 출처의 보조금, 기부금 및 기부자산, 십일조, 유산, 모금 활동 또는 후원으로 인한 수입

자선단체의 크기에 따라 다름

- 연간 총수입 25만달러 미만인 소규모 자선단체는 연차 정보보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연차 정보보고서 내에 재무 관련 질문이 포함됨
 - 재무보고서 제출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검토·감사받을 필요는 없음
- 연간 총수입이 25만달러 이상 100만달러 미만인 중형 자선단체는 검토 또는 감사받은 재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니고, 특수목적 재무보고서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 중 선택 가능함
- 연간 총수입 100만달러 이상인 대형 자선단체는 감사받은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특수목적 재무보고서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 중 선택 가능함

- 등록 기부금단체는 연차 재무보고서에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하여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호주 회계 표준위원회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AASB)의 회계 표준을 준수해야 함
 - 이상의 정보 외에도 자선단체 내 지정된 책임자(Responsible Person)의 검토 의견을 포함해야 함
 - 중형 자선단체의 경우 지정된 검토자 또는 감사인의 보고서를 선택 포함하고, 대형 자선단체는 지정된 감사인의 보고서만을 포함 및 제출해야 함
- 등록 기부금단체는 책임자나 관리문서를 포함해 기타 세부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 ACNC에 해당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¹⁹⁹⁾
 - 중형 및 대형 자선단체는 변경 후 28일 이내에, 소규모 자선단체는 변경 후 60일 이내에 ACNC에 통보해야 함
 - 통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음

-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투자나 배당금에 대한 이자, 로열티 및 라이선스 수입 (자료: ACNC, "Revenue," <https://www.acnc.gov.au/tools/topic-guides/revenue>. 검색일자: 2020. 8. 10.)

199) ACNC, "UPDATE CHARITY DETAILS," <https://www.acnc.gov.au/for-charities/manage-your-charity/make-changes-your-charity-details>, 검색일자: 2020. 8. 10.

- ACNC는 자선단체의 투명성 감독 차원에서 국민들의 자선단체에 대한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받고, 이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 및 조치할 권한을 가짐²⁰⁰⁾
- 호주에서는 국민들이 등록 자선단체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 양식이나 전화를 통해 ACNC에 해당 문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²⁰¹⁾
- 다음 예를 포함하여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ACNC법」 준수와 관련 있는 경우 행정적 조치를 취함
 - 직원들의 사익 추구 등 비자선 목적으로 기금이나 자산을 사용·횡령한 경우
 - 자선단체가 사기 또는 범죄 활동에 연루된 경우

200) ACNC, “What the ACNC can investigate,” <https://www.acnc.gov.au/raise-concern/concerns-about-charities/what-acnc-can-investigate>, 검색일자: 2020.8. 10.

201) ACNC, “HOW TO RAISE A CONCERN,” <https://www.acnc.gov.au/raise-concern/concerns-about-charities/how-raise-concern>, 검색일자: 2020. 8. 10.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사대상 국가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방식에 의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함²⁰²⁾
 - 즉 납세자의 소득원천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 적용함
 - 미국, 일본, 영국, 호주의 경우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음
- 영국은 독특한 방식으로 기부금세제를 운영 중임
 - Gift Aid는 납세자의 적용 세율에 따라 감면액이 결정되므로 공제액의 산출 면에서 소득공제 방식이라 할 수 있고,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공제액을 기부단체에 기부하거나 환급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부액의 25%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기부단체에 기부됨
 - Payroll Giving은 고용주가 급여기부 대행사에 가입함으로써 급여 중 일정액을 차감하여 기부하는 방식임

202)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으나, 다양한 소득원천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비교함

〈표 IV-1〉 기부금 조세지원 방식

국가	조세지원 방식
한국	사업소득자: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미국	소득공제
일본	원칙: 소득공제, 세액공제 선택 가능 ¹⁾
영국	Gift Aid: 소득공제 ²⁾ Payroll Giving: 소득공제
호주	소득공제

주: 1) 세액공제는 인정 NPO법인과 특정 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적용함
 2) 세금감면액을 환급 또는 기부 중 선택함
 자료: 본문 내용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각 국가별로 기부금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세지원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정치기부금, 종교기부금 등의 특정 목적 기부금을 제외한 일반 공익성 기부금을 중심으로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을 비교함²⁰³⁾
-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공익성 기부금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반면, 일본은 모든 공익성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기부금은 소득의 100%를 한도로 하고 있고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30%를 한도로 하며, 종교기부금에 대해서는 10%로 한도를 제한함
 - 미국의 경우, 현금기부는 공익성에 따라 소득의 60% 또는 30%를 적용하고 비현금성 기부의 공제한도는 50% 또는 30%이며, 가치가 증가하는 자본이득자산은 30% 또는 20%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등 기부단체뿐 아니라 기부자산 유형별로도 차등적으로 적용함
 - 일본은 공익성 기부금에 소득의 40%를 한도로 하고 있음
 - 영국의 Payroll Giving에 의한 기부의 공제한도는 소득의 25%로 최대 5만파운드 이고, Gift Aid에 의한 기부의 세금감면액 한도는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납부액임
 - 호주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203)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문화재 기부금 등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대상국 중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임
 - 우리나라는 기부금의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기본공제율 15%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함
 - 일본은 기부금에 40%의 공제율을 일률적으로 적용²⁰⁴⁾하고, 감면세액의 한도는 소득세액의 25%임

- 일본과 호주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에 한해 조세지원을 적용함
 - 기준금액이 일본은 2천엔이고, 호주의 Gift Aid는 2호주달러임

〈표 IV-2〉 기부금 유형별 공제한도

구분	기부금 유형	소득공제한도(공제대상기부)	세액공제액
한국	법정기부금	- 공제한도: 기준 소득금액 ¹⁾ 의 100%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공제대상 기부금의 15% - 1천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대상 기부금의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없는 경우: - 공제한도: 기준 소득금액 ²⁾ 의 30% 종교단체기부금 있는 경우 - 공제한도: ① + ② ① 기준소득금액 ²⁾ × 10% ② Min[기준소득금액 ²⁾ 의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미국	50% 공제한도 단체 기부금	- 공제한도 • 현금기부: AGI의 60% • 비현금기부: AGI의 50% • 자본이득자산: 장부가액으로 공제 시 AGI의 50% • FMV로 공제 시: AGI의 30%	-
	그 외 적격 단체 기부금	현금기부, 비현금기부: AGI의 30% 자본이득자산: AGI의 20%	-
일본	공제대상 기부금 ³⁾	- 공제대상: 2천엔 초과(공제대상기부금 = 기부금 합계액 - 2천엔) -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40%	- 세액공제 선택 ⁴⁾ - 공제율: (기부금 합계액 - 2천엔) × 40% - 한도: 소득세액의 25%

204)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함

〈표 IV-2〉의 계속

구분	기부금 유형	소득공제한도(공제대상기부)	세액공제액
영국	Gift Aid	- 세액감면액: 기본세율(20%)과 적용세율(40%, 45%)의 차이만큼 세액 환급 ⁴⁾ - 세액감면액 한도: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납부액	
	Payroll Giving	- 공제한도: Max[5만파운드, 총소득의 25%]	-
호주 ⁷⁾	증여형기부	- 공제대상: 2호주달러 이상 - 공제한도 없음	-
	기여형기부	- 공제대상: 150호주달러 초과(조건 ⁵⁾ 충족 시 공제) - 공제한도 없음	-

주: 종교단체기부금, 정치기부금,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기부금 등의 특정 목적 기부금은 제외함
 1)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임
 2)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임
 3)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 NPO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등
 4) 기본세율인 20% 세율 적용자는 세액 환급 없음
 5) 기부로 인한 대가가 150호주달러 이하, 기부금액의 20% 이하여야 함
 6) 공익법인 등, 인정 NPO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임(정당에 대한 기부금은 30%)
 7) 증여형 기부는 일반적인 기부 형태이고, 기여형 기부는 기부 중 일부 대가를 받는 기부임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년의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긴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미국의 이월공제 기간은 5년이고, 일본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영국의 경우, Gift Aid는 1년의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Payroll Giving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호주의 경우, 증여형 기부의 이월기간은 5년이지만 기여형 기부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표 IV-3〉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구분	기부금 종류	이월공제 기간
한국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10년
미국	자선기부금	5년
일본	조세지원 대상 모든 기부금	이월공제 없음
영국	Gift Aid	1년 소급공제, 이월공제 없음
	Payroll Giving	이월공제 없음
호주	증여형 기부	5년
	기여형 기부	이월공제 없음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산의 평가방법은 기부금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며, 기부자산의 가치를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부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기부금은 장부가로, 지정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부금 종류별로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음
 -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도 지정기부금과 동일하게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을 제안하고 있어, 기부가치 산정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현물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가치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장부가 또는 시가 중에 선택할 수 있으나 시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장부가를 선택할 때보다 낮은 기부금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기부자산의 경우 자본이득세는 과세되지 않음
 - 일본과 영국은 시가로 기부액을 산정하며 양도소득세 및 자본이득세는 비과세함
 - 호주는 주식의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보유한 5천호주달러 미만의 주식만 공제대상으로 인정해 시가로 공제하고, 그 외 자산은 12개월 이하 보유 시 시가와 장부가 중 적은 금액, 12개월 초과 보유 시 평가액으로 공제하며 5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됨

〈표 IV-4〉 현물기부 관련 제도

구분	자산 유형	기부자산 평가방법
한국	제한 없음	- 법정기부금: 장부가 ¹⁾ - 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
미국	제한 없음	- 장부가 또는 시가 중 선택 (시가 적용 시 낮은 소득공제율 적용)
일본	제한 없음	- 시가
영국	토지, 부동산, 주식·증권	- 시가
호주	주식	- 공제대상: 12개월 초과 보유한 5천호주달러 이하의 상장주식 - 평가액: 시가
	그 외 자산 (토지, 권리 등)	- 12개월 이하 보유자산: Min[시가, 장부가] - 12개월 초과 보유자산: 국세청 평가액 (5천호주달러 초과 시 소득공제 가능)

주: 1)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법정기부금의 평가방법을 지정기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출연재산에 대한 조세지원 및 주식 보유 제한

-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국가에서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증여세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미국·영국·호주는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기부받는 단체에 증여세 과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미국은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면제됨
 - 영국과 호주는 증여세가 없고 자산의 증여에 대해 자본이득세와 소득세로 과세하나,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경우 과세 면제함
 - 영국의 경우 상속재산 중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유산기부 장

려를 위하여 나머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일부를 감면함

〈표 IV-5〉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구분	증여 시 과세	상속 시 과세
한국	증여세 면제	상속세 면제
미국	증여세 면제	유산세 면제
일본	증여세 면제	상속세 면제
영국	자본이득세 면제 ¹⁾	상속세 면제 ²⁾
호주	소득세 면제	없음

주: 1) 영국의 경우 증여 시 자본이득세 과세함

2) 상속재산의 10% 이상 자선단체 기부하는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율 10% 감면함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일정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음
 - 일반 공익법인은 5%, 성실 공익법인은 10%로 지분율을 제한하고, 성실 공익법인 중 상호출자제한집단과 특수관계인 성실 공익법인은 5%로 더 낮은 지분율을 적용하며,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하는 특정 목적²⁰⁵⁾ 법인에는 20%로 한도 규정을 완화하고 있음
 - 미국은 민간재단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한도는 의결권 주식의 20%이나, 제3자에게 유효하게 지배되는 경우에는 35%까지 보유를 허용함
 - 지분율 초과 시 초과지분에 10%의 세금을 부과함
 - 일본의 경우 일반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이 공익성 인증 과정에서 50%의 보유 지분율 요건을 만족하여야만 공익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이 되므로, 지분율 미충족 시 공익법인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지분율에 의한 제한은 없지만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5천호주달러

205) 특정 목적이란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임

이하의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음

- 영국은 주식 등의 기부 및 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음

〈표 IV-6〉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제한

구분	보유주식 제한 규정	한도 초과 시
한국	일반 공익법인: 5% 성실 공익법인: ① 일반 성실 공익법인: 10%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성실 공익법인: 5% ③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법인: 20%	한도 초과 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면제 배제
미국	민간재단: 의결권 주식의 20% 예외: 제3자가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35%	① 초과지분의 10% 세금 부과 ② 최초 세금 부과 후 과세연도 말 까지 미처분 시 200% 부과
일본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50%	한도 초과 시 공익성 불인정

주: 한국은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에서의 제한 규정이나 미국은 사후관리 규정이고, 일본은 공익법인 인증절차상의 규정이므로 보유 주식의 판단 시점에 차이가 있음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 의무

- 조사대상 국가들은 모두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에 대하여 해당 기부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와 조사국 중 미국은 기부금단체가 공익목적사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부과함
 -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그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운용수익을 구분하여 각각 공익목적사용에 대한 기간과 사용비율 의무 규정을 두고 위반 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함
 -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함

-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1년 내 운용소득의 70%(성실공익법인은 80%)에 미달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외 사용하거나 3년 내 90% 미달 사용 시 증여세를, 1년 또는 2년 내 지정 비율(각각 30%, 60%)만큼 미달 사용 시 가산세를 부과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및 파생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상당액에 상속세를, 출연재산과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상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함(자기내부거래 금지)
- 우리나라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규제와 별도로 기부금단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함
- 「법인세법」 지정 지정기부금단체와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단체는 각 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함²⁰⁶⁾
- 미국은 민간재단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매년 자선목적 지출의무와 공익목적사업에 위험을 초래하는 투자 금지의무, 목적사업 외 활동 금지의무를 두고, 위반 시 규제세(excise tax)를 과세함
- 민간재단과 부적격자(재단의 내부자)의 거래, 즉 자기거래를 금지함
 - 민간재단은 매년 자선목적으로 최소 순투자자산의 5%를 지출·분배해야 함
 -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재정적 위험을 초래하는 투자를 금지함
 - 민간재단의 과세대상지출(주로 목적사업 외 지출)을 금지함
- 조사국 중 일본과 영국, 호주는 기부금단체의 공익목적사용 의무 위반 시 기부금단체 또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재검토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일본은 공익성을 인정하는 세 가지 규정이 모두 공익목적사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매년 결산 시 부적합하면 공익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206)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 시 주무관청이 국세청에,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하여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요청이 가능함

〈표 IV-7〉 기부금 공익목적사용 의무 규정

국가	공익목적 사용의무 규정	위반 시 제재
한국	공익법인 등: - 출연재산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사용 의무 - 출연재산 매각대금 공익목적사업사용 의무 (1년 내 운용소득의 70% 사용) - 출연재산 운용소득 직접 공익목적사업사용 의무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사용) - 자기내부거래 금지의무 기부금단체: - 지출액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 의무	공익법인 등: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기부금단체: 주무관청-국세청-기획재정부의 순서로 지정 취소 요청
미국	- 민간재단과 부적격자 간 자기거래 금지의무 ¹⁾ - 매년 최소 투자수익(순투자 자산의 5%) 지출 의무 - 위험투자 금지의무 - 과세대상 지출 금지의무	규제세 1차 부과 (1차 부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추가 세금 부과)
일본	-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의 적정 비용 초과 금지의무 - 유휴재산액의 공익목적사업 비용 초과 금지의무 - 공익목적사업의 비율: 50% 이상 의무	공익인증 취소 ²⁾
영국	- 공익목적 활동 수행 의무 및 자선단체위원회에 대한 수행 보고 의무	자선단체위원회가 자선단체 등록 해지 가능
호주	- 출연재산과 그 매각대금·운용수익으로만 구성되는 기부금 기금을 조성하고 오로지 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용으로만 사용할 의무	ACNC ³⁾ 가 기부금단체 자격 박탈

주: 1) 부적격자란 재단의 내부자로서, 재단의 책임자나 실질적 기여자 등을 의미함
 2) 일본은 세 가지 의무가 곧 공익법인 설립 요건이므로, 매년 결산 시 요건 부적합하면 공익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3) ACNC란 호주의 자선단체 및 비영리조직 위원회를 의미함
 자료: 본문 내용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은 사업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공익법인의 전체 비용 중 공익목적사업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공익법인의 매사업연도 말일 유휴재산액이 당해 사업연도 공익목적사업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영국의 경우 「자선단체법」과 자선단체위원회(Charity Commission)의 지침을 통해 자선단체의 공익목적 활동을 규정하고 매년 위원회에 공익목적 활동 수행 보고

를 하도록 하지만, 위반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재 조치는 규정되지 않음

- 다만 자선단체가 공익목적 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자선단체위원회의 권한으로 자선단체 등록을 해지할 수 있음

- 호주의 기부금단체들은 출연재산과 그 매각대금·운용수익으로만 구성되는 기부금 기금을 조성하고 오로지 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용 사용만 허용하며, 기금을 목적대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 호주 자선단체 및 비영리조직위원회(ACNC)가 기부금단체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무규정

- 조사대상 국가들은 모두 기부금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장부와 회계정보 등을 공개·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규정함
- 우리나라와 미국은 기부금단체의 회계정보 제출의무나 공시의무 등을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일본은 행정청에서 담당함
 -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자선단체들의 장부 보관 및 제출의무를 기본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단체에는 결산서류 공시의무 등을 부여함
 - 출연재산과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관한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 10년 보존 의무
 -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의무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의무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의 기부자영수증 발급내역 보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
 - 미국은 과세 면제 조직에 대하여 연간 총소득 수입과 지출 및 기타정보를 명시한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제출 의무 위반 시 가산세(penalty)를 부여함
 - 그 외 세법 §501(c)(3)에 기술된 자선단체는 대차대조표, 수령 기부금과 기부자의 이름 및 주소, 종업원 보수 등 지급액 등의 일정 정보를 매년 제출해야 함
 - 일본은 공익사단·재단법인이 예산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결산에 관한 '사업보고

서 등에 대한 제출서류'를 매년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고, 일반법인 및 공익법인은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지님

- 행정청은 열람 청구가 들어온 경우 제출받은 서류 등을 열람하도록 제공해야 함
- 대규모 공익법인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공고해야 함

□ 영국과 호주는 자선단체나 기부금단체의 회계정보 제출 및 공시의무 관리 및 단체에 대한 민원 처리를 별도의 단체 관리기관에 위임함

- 영국의 자선단체는 매년 연례보고서와 부속서류를 자선단체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단체의 유형과 수입금액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정보의 수준을 다르게 규정함
 - 자선단체위원회는 개별 자선단체에 정보공개를 명령할 수 있고, 필요시 조사 및 관리자 해임, 자선단체 운영체제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자선단체위원회는 자선단체에 대한 민원이나 내부고발 접수를 담당함
- 호주의 등록 기부금단체는 호주 자선단체와 비영리조직위원회(ACNC)의 회계기준(ACNC 거버넌스 회계 기준)에 맞게 자금 관리를 하고, 매년 연차 정보보고서와 연차 재무보고서(중형·대형 기부금단체의 경우)를 ACNC에 제출해야 함
 - ACNC는 필요시 기부금단체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지침 제공, 등록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ACNC는 국민들이 기부금단체에 대한 우려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조치하여 공시함

□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호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단체들에 대하여 조사 또는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를 부여함

-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규모가 큰 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세무확인 의무 및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함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 출연재산 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법인: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 받을 의무
 -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

- 미국에서 연간 연방기금으로 75만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자선단체는 특별감사를 받아야 함
- 영국에서는 한 회계연도 총소득이 2만 5천파운드를 초과하는 자선단체들의 장부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또는 감사를 받도록 함
- 호주의 경우 연간 총수입이 25만달러 초과 100만달러 이하의 중형단체인 경우 검토 또는 감사를, 100만달러 초과인 경우 감사를 받도록 규정함
- 일본은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만 명시한 것으로 보아, 규모에 상관없이 감사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임

〈표 IV-8〉 회계 투명성을 위한 공시의무 및 감사의무

국가	공시의무	감사의무
한국 ¹⁾	- 공익법인 등: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 의무, 결산서류 공시 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 ¹⁾ -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 20억원 이상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
미국	- 과세 면제 대상 단체: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 §501(c) 나열 단체: 대차대조표·기부금 수령 내역 등 정보 제출 의무	- 연간 연방기금으로 75만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자선단체: 특별감사의무
일본	- 공익사단·재단법인: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²⁾ - 공익법인·일반법인: 대차대조표 ³⁾ 공고 의무	-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영국	- 모든 자선단체: 회계장부 작성의무, 대중 요청 시 제공 의무 - 자선단체위원회 등록 단체: 연례보고서 작성 및 자선단체위원회 제출 의무, 대중 요청 시 제공 의무	- 연간 총소득 2만 5천파운드 초과 자선단체: 조사 및 감사 의무
호주	- 모든 자선단체: 자선단체위원회에 대한 연례 정보보고서 제출 의무	- 연간 총소득 25~100만달러 자선단체: 검토·감사 의무, 재무보고서 제출 의무 - 연간 총소득 100만달러 초과 자선단체: 감사 의무, 재무보고서 제출 의무

주: 1)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 출연재산 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2) 행정청은 열람 청구가 있는 경우 제출받은 서류 등을 열람하도록 제공해야 함

3) 대규모 공익법인은 손익계산서도 함께 공고해야 함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시사점

가. 납세자 간 과세형평성 제고

- 2014년부터 근로소득자만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정됨에 따라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의 세금 감면 혜택이 감소되었음²⁰⁷⁾
 -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한계세율에 따라 세제혜택이 증가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임²⁰⁸⁾
 -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한계세율이 15%인 납세자(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종전 소득공제 방식과 동일한 세금 감면 효과가 있지만, 한계세율이 15%보다 높은 납세자(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는 세금 감면액이 감소함²⁰⁹⁾
- 반면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되므로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감면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간에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207) 송헌재, 2013, p. 151; 송은주, 2015, p. 190; 임동원, 2019, p. 20.

208)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562만원임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자의 상당수가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음(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https://pci.informedia.kr>, 검색일자: 2020. 8. 3.)

209)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시 감면세액 비교>

(단위: %, 만원)

과세표준 구간	적용세율	기부금	소득공제 감면세액(A)	세액공제 감면세액(B)	차액(B-A)
1,200만원 이하	6	100	6	15	9
1,200만원~4,600만원	15	100	15	15	0
4,600만원~8,800만원	24	100	24	15	-9
8,800만원~1.5억원	35	100	35	15	-20

- 주요국의 제도를 보더라도 납세자에 따라 조세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사례는 없었고, 일본을 제외한 조사대상국에서 모두 한 가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은 종전에 소득공제 방식으로만 운영되었으나 2011년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하였고, 종전에 적용하던 소득공제와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근로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 간에 조세지원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방식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통일하거나, 일본과 같이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소득자의 조세지원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의 세액공제 방식이 조세혜택 면에서 더 유리한 한계세율에 속하는 납세자도 있으므로 다시 소득공제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의 기부를 유인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

- 만일 선택 적용이 제도의 복잡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면, 현재 2단계(15%, 30%)인 세액공제율에 추가 공제율 구간을 신설하여 고액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증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재 기부금 공제구간이 1천만원 이하와 1천만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 것에서 3개 구간으로 설정하여 추가적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최근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²¹⁰⁾을 고려하면 고액기부자의 추가적인 기부 유인을 기대할 수 있음

210)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2018년도 42%로 인상되고,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에는 45%로 인상될 예정임

나. 기부금단체의 정비 및 조세지원 확대

- 우리나라의 기부 수준은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에 비해 낮고 최근 GDP에서 개인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개인기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자선지원재단(CAF)이 최근 발표한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10년간 합산한 한국의 기부지수 종합순위는 57위, 금전기부 순위는 38위로, OECD 회원국 중 GDP 규모가 유사한 수준인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에 비해 순위가 낮음
 -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의 종합순위는 각각 4위, 6위, 54위이고, 금전기부 순위는 8위, 10위, 33위임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비중은 2012년 0.54%에서 2017년 0.45%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금단체의 분류를 단순화하면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²¹¹⁾
 - 우리나라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의 100%, 30%²¹²⁾로, 미국(소득의 100%, 60%, 30%), 일본(소득의 40%)과 유사한 방식임
 - 국가별로 100%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기부금단체가 있지만 그 대상은 상당히 제한적임
 - 기부금단체는 종전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던 것에서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정기부금단체가 도입되어, 현재는 당연법정기부금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어 기부금단체

211) 실질적으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제한도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공제한도 초과 여부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212) 각 국가별로 100% 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은 특정 단체에 제한되므로,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기부금단체로 비교함.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속하는 경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로 비교함

구분이 다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음²¹³⁾

- 또한 '법정기부금'이라는 명칭이 법에서 정한 기부금이라는 의미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부금 지원 수준이 다른 지정기부금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²¹⁴⁾

- 따라서 100%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 같이 공익성이 높은 단체로 제한하고 지정·고시하는 법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부금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는 현재보다 상향 조정한다면, 기부금 세제의 단순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조세감면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²¹⁵⁾

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 완화 검토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²¹⁶⁾하는 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할 시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함²¹⁷⁾²¹⁸⁾

21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정기부금단체는 종전에 법정기부금단체 중 일부를 3년 단위로 사후관리 후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임

214)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정기부금단체는 58개임

215) 세법상 공익성 단체의 명칭이 「법인세법」에서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상증세법」에서는 '공익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공익법인'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음

216) 재산의 출연이란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그 의사에 따라서 재산상의 손실을 봄으로써 타방의 이득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며,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삼일아이닷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의 해설」, http://www.samili.com/tax/jomunhaesul/explain_tax.asp?code=52-20:48-1&jo=48&sa=%B0%F8%C0%CD%B9%FD%CD%CE%5E%3E2%BF%AC%5E%B9%DE%CD%BA&srchFlag=true#content_body, 검색일자: 2020. 8. 3.)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218)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다음 세 가지 공익법인은 지분을 한도 없이 과세 제외함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 등(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은 10% 한도를 적용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으로서 ①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과 ② 자선·장학 및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할 시 한도가 20%로 완화됨
-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제한 규정은 1990년 말 도입되었고, 이후 강화 또는 완화되는 등의 개정이 있었음
 - 도입 당시 20%에서 1994년에는 5%로 한도를 축소하였고 2008년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10%로 확대한 후, 2011년부터는 10%를 초과하여 출연받더라도 3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완화 조치가 있었음
 - 이후 성실공익법인이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²¹⁹⁾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5%로 한도를 축소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음
 - 2018년부터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출연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에는 보유한도를 20%로 확대하였음

치단체가 출연)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고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 보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주식 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21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한국기업집단 중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의미하며, 직전 사업연도 결합 재무제표를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1일에 결정함. 2020년 현재 34개의 기업집단이 해당됨

〈표 IV-9〉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제한 규정 연혁

적용 시기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제한 규정
1991~1993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
1994~2007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
2008~2007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2011~2017.7	성실공익법인 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3년 이내 처분 시 그 초과 부분은 과세하지 않음
2017.7~2017.1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주식보유 한도는 10%에서 5%로 축소
2018.1~ 현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출연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10%에서 20%로 확대

자료: 임동원, 2019, p. 13, 〈표 10〉

-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주요 기업의 주주들이 자신이 설립하는 공익법인에 소유기업의 주식을 출연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간접적으로 유지하면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임²²⁰⁾
-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제한에 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²²¹⁾
 -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주요 근거는 현재의 규제가 주식 출연을 위축시키므로 공익법인의 활동을 저해한다는 데 있음
 - 주식 보유 비율을 폐지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보유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
 -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근거는 공익법인이 영리기업의 지주회사화 되는 경향이 있고, 주식의 배당수익률이 낮아 재원조달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음

220) 박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9권 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p. 68; 현재 2004.7.15., 2022헌바 63

221) 이상신, 2015, p. 29.

-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는 완화된 보유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해 20%로 제한하고 제3자에게 유효하게 통제되고 있는 경우 35%까지 허용되며, 일본도 50%로 제한함
 -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준이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제도 비교만으로 완화할 수는 없고 공익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식 보유 기준 완화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²²²⁾
 - 예를 들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임
 - 보유자산 중 주식의 비중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21.8%로, 전체 공익법인 평균인 5.5%에 비해 높았음
 - 보유주식 중 74.1%가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나타남

-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식 출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적인 자산의 증여 및 경영권의 우회 지배 등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임
 - 따라서 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를 확대하기는 어려

222) 2017. 8. 1. 지정된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51개 기업집단이 보유한 165개 공익법인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구성임.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임(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보도자료, 2018. 6. 9.)

(단위: %)

구분	토지	건물	금융	기타	주식(A)	계열사(B)	B/A *100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7.1	20.8	31.6	18.7	21.8	16.2	74.1
공익법인 전체	17.3	23.7	33.7	19.8	5.5	-	-

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일반 공익법인이나 성실공익법인 또는 의결권 미행사 주식의 한도 확대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일반공익법인과 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의 한도를 현재의 5%, 10%에서 20%로 확대하거나, 의결권 사용의 제한을 전제로 2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는 출연 시점에 과세 면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익법인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의 영리사업을 운영한다거나 기업지배 문제 등은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 시 다시 과세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세법 개정에서도 일반공익법인에 대해 종전 5%에서 10%로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위반 시 다시 5%로 제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음
 - 사후관리 방식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한도 확대가 가능할 것임

라.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 의무 규정 효율적 정비

-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 의무 규정은 의무 이행 기간과 비율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다른 조사국에 비해 구체적이긴 하지만, 흠어진 규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행정상 효율성을 떨어뜨림
- 우선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상증세법」에서 출연재산 및 매각대금·운용소득 공익목적사용 의무 사용기한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비율은 최소 70%(성실공익법인 80%)로 구체적으로 규정함²²³⁾
 - 각 기간과 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도 경우별로 명시되어 있음
- 「법인세법」에서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

223) 「상증세법」 제48조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의무를 지우고, 그 의무 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이 국세청장에게 알리며,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기부금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끔 함²²⁴⁾

- 실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익법인 등과 기부금단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 의무를 이행하려는 단체들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담당 부서와 관리 절차가 몇 단계로 이루어져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함
 - 주무관청이 매년 공익법인 등이 정해진 비율만큼 공익목적 지출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만도 어려운데, 확인 결과를 국세청·기재부 등과 유기적으로 공유하기란 더욱 쉽지 않을 것임

- 반면 조사국 대부분은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재산 및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 의무 자체만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고·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간략히 규정함
 - 일본은 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사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익 인증을 취소함
 - 영국과 호주는 공익목적사용 의무를 공익법인 등의 등록 허가 조건으로 삼고, 의무 불이행 시 정해진 하나의 권한기관이 등록 취소할 권한을 가짐
 - 공익법인으로서의 자격이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단체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모두가 사라지므로, 일부 공익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타격이 크고 높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임
 - 이처럼 대부분 국가의 공익목적사용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보다 간단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오히려 더 제재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임

- 이에 우리나라도 공익목적사용 의무에 대한 규정이 적용 및 규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의무규정과 기부금단체의 의무규정이 단일화되어야 할

224)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것임

-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명칭을 공익법인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한바, 의무규정의 단일화 역시 점차 진행될 것이라 예상됨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일정 비율만큼 사용하도록 하는 상세한 규정은 완화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행정비용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임
 - 예를 들어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만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3년 이내 90%만 사용하도록 하는 식의 완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사후관리와 이와 관련된 지정 취소절차의 단계들을 축소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 요구됨

마. 투명성 관리 담당 기관의 일원화 및 국민 참여 제고

-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운용 및 지출에 대한 개인들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 개인기부 비활성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나, 사실상 기부금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현 제도는 잘 정비되어 있는 편임
 - 다만 그럼에도 기부금단체의 부정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제도 운영 관리·감독의 기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공익법인의 지정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어, 각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효율적 관리가 어려움
 - 공익법인 등 지정은 「민법」상 각 주무관청이 하며, 이 중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법인세법」상 기획재정부가 함
 -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는 「공익법인법」상 주무관청²²⁵⁾과 「상증세법」상 국세청이

225)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2

담당함

- 반면 조사국들은 대부분 기부금단체(공익법인)의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기관 또는 부서에서 관할하는 방식을 채택해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보임
 - 조사국 중 영국, 호주의 경우 별도의 기부금단체(자선단체) 관리 기관에서 등록부터 사후관리, 감독까지 전담함
 - 영국은 자선단체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서 자선단체의 등록 및 운영을 관리하고 세무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시 국세청(HMRC)과 협력함
 - 호주에서는 자선단체와 비영리조직위원회(ACNC)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단체(DGR)에 대한 지정과 사후관리, 지정 해지 등을 담당함
 - 미국은 국세청에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인가·관리·감독을 총괄함²²⁶⁾
 - 이에 우리나라도 다른 조사대상국들처럼 세제 혜택을 받는 기부금단체 지정 및 관리 담당 기관을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 요구됨
 - 행정비용 등을 감안할 때 영국과 호주처럼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 어렵다면 정책부서 내에 소규모 집단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부에 모든 의무를 일임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감시 기능, 단체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등을 강화하는 문화의 구축도 필요함
 - 영국, 호주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기부금단체의 운영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쉽게 신고하고 담당기관이 검사에 착수하는 통로를 열어놓아 국민들의 감독 기능을 적극 활용함
 -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공익위반 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 개설 시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등 1개 이상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도록 하였는데,²²⁷⁾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짐

조 제2항)

226) 서희열,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조세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p. 122.

참고문헌

- 고경환·장영식·이연화·고금지·진재현·전지수, 『나눔실태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고경환·장영식·이연희·한솔희·진재현, 『나눔실태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보도자료, 2018. 6. 9.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공익법인 세무안내』, 국세청, 2020a.
- _____,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국세청, 2020b.
- 김무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해산 단계에 따른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기획재정부, 「2020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2019.
- 김진·박태규·손원익·우석진, 『기부금 세제개편에 따른 기부참여 변화 -기부금 탄력성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
- 김진수·김태훈·김정아,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 김학수·송은주·이형민·조승수, 『주요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박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9권 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pp. 55~79.
- 서희열,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조세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pp. 92~132.

227) 2020년 개정 세법 참고(「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송은주,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 32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5, pp. 167~198.
-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제6권 제4호, 한국재정학회, 2013, pp. 151~178.
- 송헌재·고선·김지영,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개인기부 규모 추정」, 『유라시아연구』, 제16권 제3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9, pp. 123~140.
- 신상화·송은주·이성현, 『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 과세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원종학·이형민·홍성열,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임동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KERI 정책제언』, 19-03, 한국경제연구원, 2019.
- 이상신,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5.
- 정정운, 『세법학 I』, 상경사, 2019.
- 정훈·김도연·박금비·유현영,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CAF, *CAF World Giving Index-Ten Years of Giving Trends*, 2019.
-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de 66th edition*, 2020a.
- _____, *British Master Tax Guide 2019-2020*, 2020b.
- IRS, *Charitable Contributions*, Publication 526, 2019
- 寄付白書発行研究会, 『寄付白書2017』, 2017.
- 中田ちず子 編著, 『非営利法人の税務、会計』, 大蔵財務協会, 2015.
- エヴィス会計法律事務所, 「一般社団法人等に関する相続税・贈与税の見直し-平成30年度税制改正-」, <https://www.e-zeirisi.com/ippansyadan-h30kaisei-12213.html>, 검색일자: 2020. 7. 23.

삼일아이닷컴, <http://www.samili.com/>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ACNC), <https://www.acnc.gov.au/>

CAF, Australia Giving 2019, 2019, https://www.cafonline.org/docs/default-source/about-us-publications/caf-australia-giving-report-2019-16master.pdf?sfvrsn=65e49940_2, 검색일자: 2020. 8. 9.

Charity Commissio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harity-commission>, 검색일자: 2020. 7. 30.

Church Executive, "Giving USA 2020: Data show 2019 one of the highest years for giving on record," <https://churchexecutive.com/archives/giving-usa-2020-data-show-2019-one-of-the-highest-years-for-giving-on-record>, 검색일자: 2020. 8. 5.

Etax, <https://www.etax.com.au/>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調査研究(寄付白書)」, <https://jfra.jp/research>, 검색일자: 2020. 8. 5.

National Council of Nonprofit, "Nonprofit Audit Guide," <https://www.councilofnonprofits.org/nonprofit-audit-guide/need-independent-audit>, 검색일자: 2020. 7. 14.

OECD.Stat, <https://stats.oecd.org/>

Philanthropy Australia, <https://www.philanthropy.org.au/>

세법연구 20-01
개인기부 관련 과세제도 연구

발 행 2020년 10월 31일
저 자 권성준·송은주·김효림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쇄 거목정보산업(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ISBN 979-11-6655-001-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